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

2026. 2.



보건복지부

목 차

I. 사업 개요	1
① 추진 배경	1
② 사업 개요	3
③ 추진체계 및 역할	6
II. 세부 사업 내용	9
①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및 관리	9
② 개입 거부 대상자 관리	19
③ 예방 및 관리 서비스	25
III. 주요 연계 가능 서비스	48
IV.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매뉴얼	81
V. 사업 관리 및 행정 사항	109
① 예산 편성 집행 관리	109
② 사업 평가	111
③ 행정 사항 및 기타	113
VI. 부록	116
①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	116
② 고독사 예방법	147

I.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현황

-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가 취약한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 사회 배제(도움 거부) 중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고립집단이 13.7%(보건 복지포럼 22.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거노인 등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계층 및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 사례* 지속 발생

* 창신동 모자('22), 영도구 고독사('22) 제주시 70대 백골 사망자('24), 양천구 30대 청년 고독사('24) 등

-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연계 부족

□ 추진 방향

- 고독·고립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의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매뉴얼) 제시
-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 추진 경과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 및 시행('21.4.)
- 전국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현황 파악('21.2.~6.)
- 고독사 예방사업 소관부서 변경(자살예방정책과 → 지역복지과, '22.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견수렴 시·도 간담회 개최('22.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2.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22.6.) 및 참여 지자체(9개 시도, 39개 시군구) 선정('22.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개시('22.8.~)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원체계 운영
(지자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22.8.~)
- 전국 229개 시군구 시행('24.7.~)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신규 추진('25.2.~)
- 국정과제(91-3)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이 포함되어 정책 범위가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25.9.)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26.2.~)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통합 운영)
- 사업 대상자 확대(고독사 위험자 → 고독·고립 위험자) ('26.2.~)

2 사업 개요

□ 고독사 정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사망 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 가족·친척·직장동료·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
- (사망 시) “임종하는 것”
 -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서, 범죄행위를 제외한 자살·병사·사고사 등으로 아무런 보살핌 없이 사망

□ 사업 추진방향

- (목표) 고독·고립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방향) 고독·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

□ 추진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원칙

-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밀착형 고독·고립 지원 체계 구축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 취약 계층 추가 지원
- AI, IoT 등 정보기술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효율성 제고

□ 참여 지자체

-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사업 예산

- (보조사업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 (보조구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 (사업규모) 17개 시도에 총 69억 원(지방비 포함 시 138억 원) 지원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50%)	지방비(50%)	
			광역(30%)	기초(20%)
사업규모	13,800	6,900	4,140	2,760

□ 사업 대상

① 고독·고립 위험자

-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 및 관리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활용

- 고립 위험자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1점 이상 5점 이내인 사람 중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여 선별

* 향후 사회적 고립 위험도 판단도구를 개발하여 배포 예정('26년 하반기)

- 고려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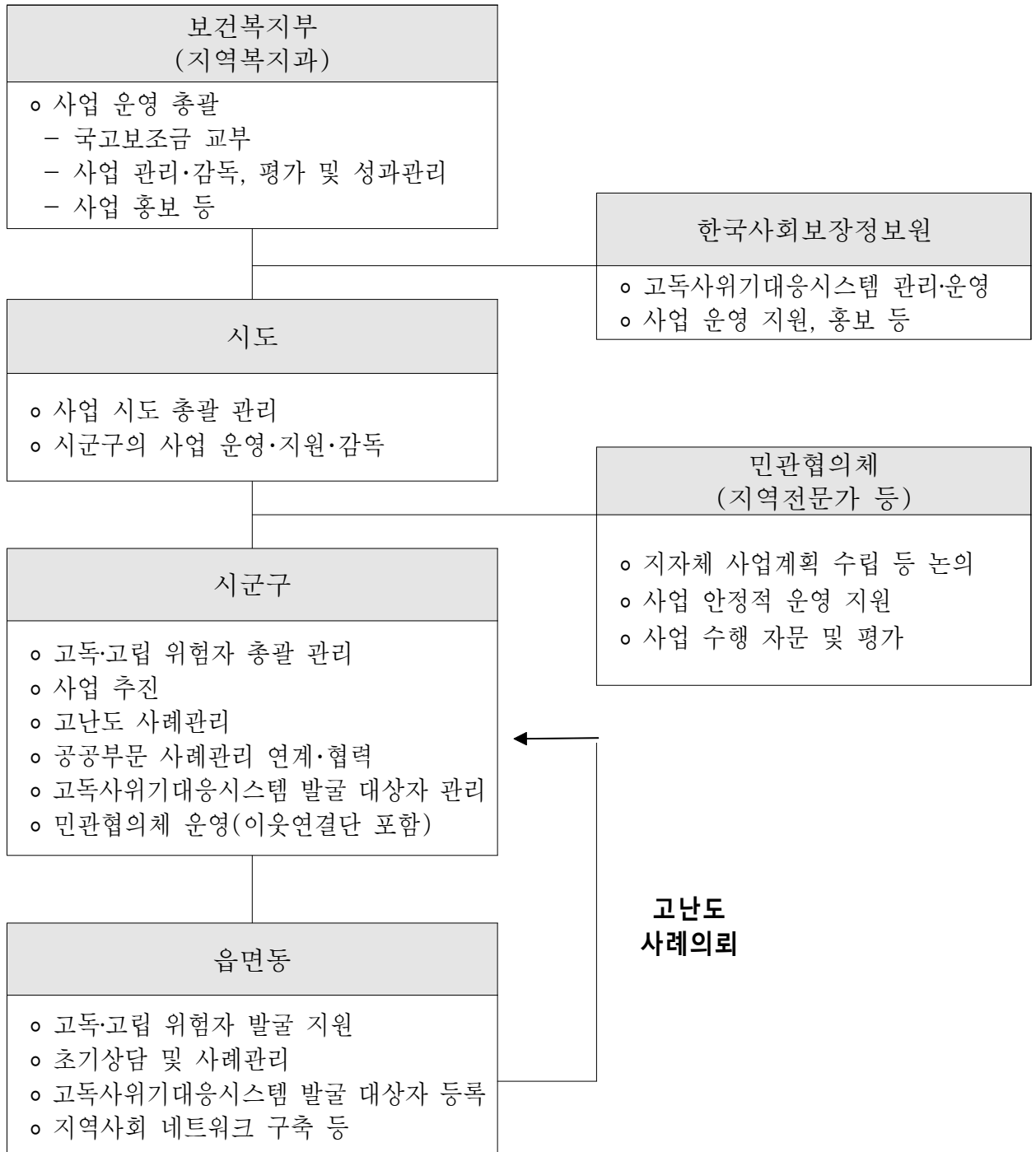
- ▶ 지자체별 인구 구성(청년, 중장년, 노인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기존 생애주기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우선 고려
 - *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중 1인 가구 등
- ▶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다인 가구(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기타) 지자체 담당자가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고독사한 사람(이하 고독사 사망자) ※ 사후관리 지원에 한함

- 고독·고립 위험자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고독사 의심사례 대상자

3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수행체계



□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

구분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고립 예방·관리 서비스
보건 복지부	▶ 사업 지침 시달 ▶ 사업 관리·감독, 평가 및 성과관리 ▶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사업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	
시도	▶ 사업 시도 총괄, 평가 및 성과관리 ▶ 시군구 운영·관리에 대한 기획·조정·지원계획 수립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예산 조정·배분 ▶ 사업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시군구의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지원 및 관리·감독 ▶ 시군구의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
	▶ 시군구의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시군구의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	※ 광역 단위 서비스 모형 기획 및 시군구 보급 가능
시군구	▶ 사업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인력 배치 ▶ 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 ▶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 협조 ▶ 지방비(시군구 부담분) 확보 및 예산집행 ▶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자원관리 ▶ 지역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원 기반 확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 고독·고립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 사업 홍보 등	
	▶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등 총괄 관리 ▶ 고난도 사례관리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사업 추진 ▶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대상 검토 및 선정(직권선정 포함) ▶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적용(광역 개발 모형의 적용 포함)
읍면동	▶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입력	

구분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고립 예방·관리 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가 중복된 경우 복지사각지대 업무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시스템 입력 후 고독사 업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	
	▶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지원 ▶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대상 신청 ▶ 시군구의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사업 지원
민관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또는 신설	▶ (민관협의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 주요사항 논의 - 지역 내 관련 서비스 확충을 위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사업 자문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고립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자원 발굴·기획 단계 자문 - 지역 단위 고독·고립 위험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원정보 공유 - 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운영 개선방안 도출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사업계획 및 사업 운영 지침 등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 ▶ 사업현황 모니터링, 연구개발, 통계 생산·분석 등 ▶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 ▶ 사업 홍보지원 등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관리	

Ⅱ. 세부 사업 내용

1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및 관리

1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관리 단계별 운영 절차

구분	사업유형	주요 내용
발굴 / 접촉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 ▶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읍면동)에 배부된 고독·고립 위험군 발굴대상자 조사 ■ 지자체 기획조사·생활 접점 홍보(주민/관리사무소/상점 등) 발굴 ※ 필요시 선택적 실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 예시1: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시군구청 및 동주민 센터로 제보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 예시2: (복지등기 우편사업) 위기상황 확인이 필요한 주민을 선정하여 우편물 발송 및 집배원이 대상 가구에 우편물 배달 및 기초정보를 전달하여 확인
	최초 안전확인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촉(예: 비대면 → 대면 순) ■ 생존·건강·거주 확인 및 응급/자살위험/폭력 등 위기 여부 판별
	고독·고립 위험자 판정 및 관리	■ 고독·고립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별 ■ 대상자 명단 및 연계·지원 이력 관리(읍면동/수행기관 사례관리·서비스로 연결) ▶ 고독·고립 위험자 명단 관리는 반드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관리
	긴급개입 및 응급연계	■ 응급·자살위험 등 고위험자에게는 즉시 119/경찰/정신건강센터/전문기관 연계 ■ 시간(72간 등) 내 재확인 및 필요시 보호조치
관계 형성	정기 안부체계 마련	■ 안부 주기(주1/격주/월1 등)·채널(전화/문자/방문/비대면) 설정 ■ 무응답·연락두절 시 재접촉 기준(경보 기준) 설정 ▶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우유/야쿠르트/음료 지원사업) 고독·고립 위험자에게 야쿠르트 지원을 통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ICT 활용)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고립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저문턱참여· 활동기반 연결	■ 소규모·단기·체험형 등 부담 낮은 참여 유도 ■ 참여이력 관리 및 중도이탈 방지(동행/리마인드/인센티브 등)
연계	통합지원 계획수립·조정	■ 목표·역할·일정·기관책임을 포함한 통합지원 계획 수립 ■ 중복·누락 점검 및 필요시 조정회의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 경제·주거·건강·관계·안전 영역별 필요도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 익명성, 비대면 접근을 기본원칙으로 정신건강, 자살위험 등 심리·정서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연계 ▶ (중장년) 체납, 실직, 주거수준 하락 등 경제·주거 위험신호를 탐지하여 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지원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복지, 주거, 고용) 연계 ▶ (노인) 병원 동행, 청소·식사배달 등 일상지원을 통해 돌봄공백과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 안전확인을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제공 ※ 공공·민간·타부처·지자체 사업(복지·보건·고용·주거 등) 연계 예시 ▶ (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복지부),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등 ▶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복지부), 중장년층취업지원(고용부) 등 ▶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복지부) 등
모니 터링	위험도 재평가 및 유지관리	■ 정기 재평가(위험도 변화·서비스 효과 검증) ▶ 안정화군은 모니터링으로 전환(빈도·방식 조정) ▶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 강화로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르게 개입
	재위험 신호 기반 재개입	■ 재연락두절·서비스 중단·체납/퇴거 재발·정신위기 재발 등 재위험 신호 발생 시 신속 재개입 ■ 조치 결과 기록·관리
사후 점검	종결 및 사후점검	■ 종결 기준 충족 시 종결(자립·연결망 확보·위험도 안정 등) ■ 종결 후 3/6개월 등 사후점검으로 재고립 방지
	재등록 경로 운영	■ 사후관리 중 재위험 시 재등록·우선연계 ■ 재유입 원인 분석 및 운영개선 환류

②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실시

○ (시스템) 고독·고립 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26.2~)

- (운영방식) 고독사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분석,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지원

- (정보입수)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정보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27종의 정보를 입수, 총건수는 회차별 약 600만명

※ 연간 4회(1월, 4월, 7월, 10월) 발굴, 회차별 약 4.5만 명 규모(연간 18만명 예정)

- **(위험자 판단)**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6점 이상이면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고, 고립 위험자는 1점 이상 5점 이내인 사람 중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여 선별
- **(중복 대상자)** 발굴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와 중복되면 복지사각지대 업무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고독사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한 발굴조사 실시

- **(기획조사)** 지역내 고독·고립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위험자 발굴 가능
(선택적 실시, 지자체 예산 활용)

*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임대아파트 등 밀집지역,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 보유 등

- **(유의사항)** ①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관내 수행 중인 타 사업의 대상자 중에서도 고독·고립 위험자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사업담당자들에게 위험자 의심사례 발견 시 고독사 사업담당자에게 연계*하도록 안내

* (사업담당자 역할) 고독·고립 위험자로 판정시 위험자로 명단 관리하면서, 기 지원 중인 타 사업 서비스는 유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추가 지원 또는 타 사업(기존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으로 추가 연계 지원

②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사업담당자는 본 사업뿐 아니라 타 사업 간 연계도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다는 경력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치할 것을 권고

- **(현장 신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여 본인 또는 이웃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 등 지역 인적 안전망, 생활밀접 업종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활용 독려

* (사회보장급여법 13조) 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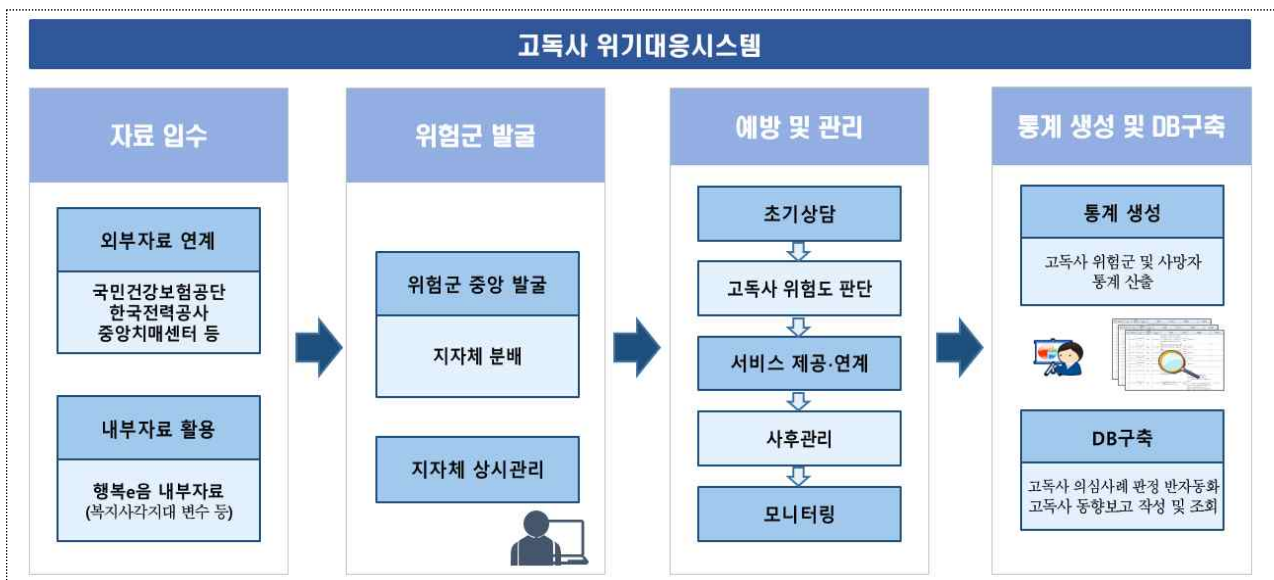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요

□ 추진 배경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유관기관 및 시스템간 정보를 손쉽게 연계·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의 구현 필요

□ 주요 기능

- ① (위험군 발굴)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 발굴변수 정의에 따른 대상자 DB구축 및 연계
 - 고독사 위기변수 27종 입수·분석하여 연 4회, 총 18만 명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선정, 지자체에 명단 배분(1·4·7·11월, 회차당 4.5만명)
 - 지자체 담당자 가구 방문 및 전화 등 통해 고독사 위험자 판정(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활용)하고 위험자 대상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제공·연계
- ② (고독사 예방·관리) 상담-위험군 판정-고위험군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③ (통계 생산·분석) 고독사 관련 유관기관 자료 연계를 통한 고독사 통계 생산 및 DB구축, 위기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원



참고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위기정보 연계 현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보 연계 대상

연번	위기 정보(27종)	보유기관(14개 기관)
1	단전	한국전력공사
2	전기료 체납	
3	단수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4	수도요금 체납	
5	단가스	도시가스사(33개소)
6	가스요금 체납	
7	건보료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9	전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월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1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한국토지주택공사, 12개 지방도시공사
12	일용근로대상자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13	자살고위험관리대상자	자살예방센터
14	내원사유 자해/자살 대상자	중앙응급의료센터
15	금융연체대상자	한국신용정보원
16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업체 5개소)
17	통신비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8	기초·긴급 신청탈락·중지	보건복지부
19	장애정보(지체)	
20	서비스 중단자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	치매정보	중앙치매센터
22	생활패턴 감지정보	한국전력공사
23	고혈압(질병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4	당뇨(질병정보)	
25	간경변(질병정보)	
26	정신질환(질병정보)	
27	알코올질환(질병정보)	

참고3

복지위기 알림 앱(복지부)

□ 추진 배경

-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즉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주요 내용

- (이용자)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등 업무유관자
 -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검침원 등
- (위기 알림 대상)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이웃
 -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등
- (알림 정보) 위기상황, 가구유형* 및 대상자 정보(성별, 주소, 알림내용 등)
 - * 독거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등
- (처리 절차) ① 본인·이웃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앱·포털) ⇒ ② 시스템 접수·지자체 배정 ⇒ ③ 읍면동 대상자 확인 및 상담, 복지 서비스 제공

①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 ▶ 본인·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
- ▶ 모바일 위기알림 앱·포털(복지로)을 통한 도움요청

② 접수·지자체 배정

- ▶ 도움요청 접수(행복이음)
- ▶ 대상자 정보* 매칭
(행복이음-사각지대발굴시스템)
*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해당 여부, 위기정보 입수, 수급·상담 이력 등
- ▶ 지자체 배정(읍면동)

③ 대상자 확인·상담 및 서비스 제공

- ▶ 대상자 확인(읍면동)
 - * 수급·상담 이력 등 조회
-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
 -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필요시 공공·민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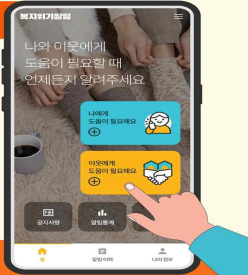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앱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무료로 설치하세요

나와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려주세요



3 고독·고립 위험자 판정 및 관리

□ 고독·고립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명단과 서비스 지원·연계 내용은 시스템으로 관리

- (판단도구) 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활용
 - 단, 고독·고립 위험자로 의심되는 자의 개입거부 등 판단도구의 사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 자체 판단에 따라 도구 활용 없이 지원 가능(시스템에 도구 미사용 사유 반드시 기재 및 개입거부 등 상황 해소 시 도구 사용관리(이력관리 필요))
- (명단 관리) 위험자 지원현황 관리 및 통계산출 등 위해, 판단도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된 대상자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 등록하여 명단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연락처	
가족 유무	☐ 있음 → 교류 여부(대면비대면)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월 1회 미만 ☐ 교류 없음 ☐ 없음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거주지 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텔) ☐ 원룸 ☐ 쪽방 ☐ 여관·모텔 ☐ 직접 기재()			
거주지 점유 형태	☐ 자가 ☐ 전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세·사글세·연세 ☐ 무상 ☐ 기타()			
경제 활동	☐ 없음 ☐ 상시근로 ☐ 임시·일용근로 ☐ 자영업 ☐ 기타()			
건강 상황 (중복 응답 가능)	☐ 양호 ☐ 장애 (구분:) ☐ 질병 (구분:) ☐ 기타			

질문 내용	답 변	
1) 지난 1주 동안 평균 하루 한 끼 식사도 하지 않았다.	☐ 예(1점)	☐ 아니오(0점)
2) 지난 1주 동안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1회 이상 있었다.	☐ 예(1점)	☐ 아니오(0점)
3) 지난 1주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소통(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	☐ 예(1점)	☐ 아니오(0점)
4)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기관)이 없다.	☐ 예(1점)	☐ 아니오(0점)
5) 현재 지속적 일자리나 복지급여 등의 일정한 소득이 없다.	☐ 예(1점)	☐ 아니오(0점)
6) 최근 1년간 임대료 체납,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 예(1점)	☐ 아니오(0점)
7)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못하고) 있다.	☐ 예(2점)	☐ 아니오(0점)
8) 나와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 예(1점)	☐ 아니오(0점)
9) 지난 2주간 지속해서 심한 외로움(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 예(2점)	☐ 아니오(0점)
10)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거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예(2점)	☐ 아니오(0점)

총 점	_____ 점	☐ 위험군(6점 이상)	☐ 해당없음(0~5점)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의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제공, 통계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조사 응답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5년 경과 시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정부·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제공, 통계 관리, 고독사(고립)위기대응시스템 운영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조사 응답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5년 경과 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문항별 조사 가이드

문항	조사 가이드
1	■ '한 끼'는 배가 고플 때 챙겨 먹는 식사를 의미하며, 밥뿐만 아니라 빵, 라면 등도 식사에 포함(단, 주류(막걸리 등), 과자류는 제외) [질문예시] ▶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도 먹지 않은 날이 있으세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하루 한 끼도 먹지 않은 날이 며칠이나 되세요? - 식사는 주로 어떤 것을 드세요?
2	■ 평소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일시적으로 단주한 경우*라면 단주 전 기준으로 판단 * 치료, 약 복용 등의 이유로 잠시 마시지 않은 경우 [질문예시] ▶ 평소 술을 드시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드신 적 있으세요?
3	■ 연락이나 만남은 필수목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예) 필수목적 연락 : 집주인과 월세·공과금 납부 관련 통화 등 - 필수목적 만남 : 장보기, 병원 진료, 은행·관공서 방문으로 인한 만남 등 [질문예시] ▶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시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와 몇 번이나 연락하셨어요? 전화나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연락 안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 다른 사람들은 만나시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와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 그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시나요?
4	■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몸이 아플 때 돌봐줄,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과 기관(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의미 * 민간기관에는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등 포함 [질문예시] ▶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나 기관이 있으세요? 기관은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곳이에요. * (추가 가능 질문) 그분들이 주는 도움에 만족하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 (추가 가능 질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도움받을 의향이 있으세요?
5	■ 보유 자산 등으로 인해 소득(임대수입, 이자 등)이 있을 시 '아니오'라고 답변 [질문예시] ▶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일을 하시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일을 지속적으로(혹은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신가요? -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경우) 복지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이자를 일정하게 받으시나요?

문항	조사 가이드
6	■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단순 착오 등에 의한 체납의 경우는 제외 [질문예시] ▶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되나요? ▶ 최근 1년 동안 임대료나 수도·전기·가스 요금이 두 달 이상 밀린 적이 있었나요?
7	■ 자세한 병명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치료 경험(입원 등)이 있었는지 질문 [질문예시] ▶ 최근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적이 있었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너무 아프거나 괴로워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셨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병원 진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않은) 적이 있나요?
8	■ (대면 상담시) 대상자의 답변 이외에도 거주환경, 신체 및 의복 청결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판단 [질문예시] ▶ 평소에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 빨래나 청소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청결하지 않거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9	[질문예시] ▶ 이번에는 선생님의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지난 2주간 지속해서 외롭거나 고독하다고 느끼셨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2주간 외로움 때문에 생활하는 게 힘든 정도였나요?
10	[질문예시] ▶ 우리는 간혹 힘들 때,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선생님도 지난 6개월 사이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참고 사항

- 조사표의 목적은 고독·고립 위험자 선별이므로,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파악을 위한 심층 상담은 별도로 실시해야 함
- 각 질문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위험 수준을 파악
- (대면 상담 시) 대상자의 답변 이외에도 직접 관찰한 대상자의 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2 개입 거부 대상자 사회참여 유도

개입단계	단계별 개요
[1단계] 사전준비	- 발굴 리스트 관리와 거부 대상자 사전 접촉을 위한 준비 단계 [주요핵심전략] - 초기 발굴 인력(이웃연결단 등)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를 결성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권역을 분담 - 사전 접촉은 전화, 방문으로 실시하며, 정보제공에 초점을 둠 -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접촉이 안될 경우 1회 방문 실시 권고 - 모든 접촉을 거부할 경우 방문하여 안내문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식 활용 - 거부 유형의 근거가 되도록 거부하는 말, 표현, 태도 등을 기록
[2단계] 초기접촉	- 거부 원인 및 특성과 거부위험 요소 확인을 통한 거부유형* 분류 * 거부당사자 관점/전달체계 관점 [주요핵심전략] - 위기정보 등의 객관적 징후와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거부 가구 접촉→초기상담→거부정도, 거부특성 및 거부위험요소 확인→거부유형 분류→개입과 지원체계 계획 - 대상자의 거절을 수용 및 분석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접근
[3단계] 개입 및 회복	- 당사자에 대한 관계 기반의 접촉을 통한 신뢰와 안전감 형성 - 생활 환경 내 일상적 동선 속에서의 서비스 제공 - 생활권 커뮤니티 참여로 일상의 점진적 회복 유도 [주요핵심전략] - 사회복지사+정신건강 전문가+동료(peer) 멘토 등이 참여하는 협력구조적 접근 필요 - 장기적 사례관리 및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기 위한 위기 대응 통합체계 구축 -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 후 보건의료·복지이용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연계·지원 - 식사·취미·대화 중심의 낙인감 없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사회적 교류활동 촉진
[4단계] 사회적 연결	-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복원과 강화 - 사회 속으로의 재진입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 회복 - 일상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 모색 및 성취 경험 획득 [주요핵심전략] -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이웃-민간-공공 협업구조 구축 - 자립 회복 경험자의 멘토화 및 동년배 대상 지원체계 운영 - 사회적 역할 경험을 위한 자조모임·봉사활동·사회경제적조직 등 참여 기회 제공 - 점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형(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등)→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일반 고용의 단계형 일경험 경로 구축과 참여 지원
[5단계] 지속 및 자립	- 지속적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자립에 도달하도록 지원 - 역량강화를 통한 재고립 예방 및 자립역량 증대 지원 [주요핵심전략] - 가족-이웃-민간-공공 협업구조 유지 - 자립 중장년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협업 체계 구성 - 건강·돌봄·주거·고용 등의 통합적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사회참여 시작 이후에도 장기적 사후관리방안 모색 - 사례관리 종결 후에도 간헐적 안부 확인 및 AI·IoT 등 기술 기반의 지속적 모니터링 유지(최소 3개월 이상)

□ 거부유형별 특성 및 개입방안

✓ 거부당사자 관점에서의 거부유형

구 분	정의 및 행동특성	개입방안
보호막형	•과거 상처·배신·폭력·수치심·의존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거나, '거절·단함·회피'를 우선적 반응으로 선택 •관계를 끊고 숨어 들어가는 태도 -말없이 손사래를 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집에 없는 척하거나 전화를 꺼 놓는 등 전형적인 관계 회피 행동을 보임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유예하는 행동 -누구 만나는거 싫다, 다 필요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술 끊어야 된다, 기분이 좋지 않다, 전화 없다 등 일부러 단호한 표현으로 벽을 치는 말 (과격함 연사)과 행동을 보임	•생존을 위한 자기 전략을 방어막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해 필요 •건강이 걱정되어서 왔다고 알리고 기다리겠다고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기보다 가볍게 궁금한 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가볍게 자주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
정보·신뢰 부족형	•서비스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애초에 이용 자체를 시도하지 못함 •복지관은 '나보다 더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 -복지관 방문 거부가 자기방어적 특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중장년이 갈 믿을 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 -갈만한 곳과 그 장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제도가 자신을 품어주지 못한다는 인식 -'내가 다 해봤다', '그런게 있느냐', '나는 아마 안될거다',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등 자신이 해볼만큼 해봐서 더 이상은 어렵다 표현	•'같이 해보자'라는 말로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제안 •정보 신뢰 부족이나 과거에 이미 경험해 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필요 •정보를 연결하여 개선된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고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음을 확인 시켜주기
회복중형	•과거 반복된 부정적 경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혼자 버티며, 일상과 몸을 재구성하는 시기', '일상 과업과 일을 통한 자기 회복', '술·중독·수면'을 조절하며 몸을 다시 세우기'등을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기 -자신이 잘 알아서 한다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거절하는 패턴 -규칙적인 소일거리(농사, 일자리 사업참여, 종교활동, 운동하기 등)를 하며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임 -집 밖을 다니지만 특별한 관계맺기나 대면활동 없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이 있지만 정작 도움을 줄 타인은 없는 경우	•거부처럼 보이지만 회복기라고 이해 필요 -타인의 관계보다 '몸과 멘탈을 겨우 유지하는 것'이 1순위 과업으로 외부 접근·프로그램이 부담될 수 있음 •관계를 다 끊겠다'라기 보다는 회복 속도를 방해할 수 있는 깊은 개입에 대한 거부로 나타남 •스스로 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인정, 바람직성을 강조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활동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사는 과정으로 안내하는 접근 필요

✓ 전달체계 관점에서의 거부유형

구 분	정의 및 행동특성	개입방안
접촉거부	•가장 원초적이고 위험한 형태의 거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조차 내지 않거나, 전화 및 문자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등 외부와의 모든 접점을 차단 -물리적 차단: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처가 아예 없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최고 위험군의 신호로 간주 -비대면 거부: 전화나 문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문고리에 걸어둔 후원 물품조차도 '필요없다'며 가져가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회피 및 잠적: 부채나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아예 숨어버리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거지에서 숨어지내는 양상을 보임	•비대면·간접적 접근 -후원 물품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재방문 시 대상자가 받아갔는지 확인하는 등 꾸준함을 통한 생존 확인 -직접적인 대면 압박이 없어 대상자의 경계심을 낮추는데 효과적 -(유의점)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자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감시받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주의 필요 •핵심 매개체 활용 -반려동물이나 소액의 경제적 유인(생계비 지원, 긴급지원, 통신비 등) -(유의점)담당자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냐'는 등 대상자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 필요
관계형성 거부	•라면, 밑반찬 등 물품 수령과 같은 최소한의 접촉은 허용하지만, 사적인 대화나 신뢰 관계 구축은 회피 •공식적인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며, '이웃'이나 '동네 사람'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특징	•개인 맞춤형 관심사 발굴 및 연결 •'복지'가 아닌 '일상'으로의 초대(정서적 교류) -중장년 거점 공간: 편하게 머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점 공간(이바쇼, 마음편의점, 도서관 등) 필요 -지역사회 연계 활동: 복지기관 프로그램 대신, 지역 상점(예. 베이커리)이나 주민 강사를 활용하여 일반 주민과 자연스럽게 섞여 복지 대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거부	•어느 정도 관계는 형성되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나 공식 프로그램 참여 등 제도권 서비스는 거부 -과거 공공기관 방문시 거절당했던 '가봤자 아무 것도 안해주더라'는 부정적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서적 지원은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특정 서비스(주로 금전)만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양상 -현금 중심의 욕구: 정서적 지원은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거부하며, 경제적 지원이 아닌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다고 선을 긋는 경우 -선택적 개방: 상담은 가능하나 개입 필요한 서비스(예. 정신과 치료, 주거 환경 개선)는 거부	•역할 부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 •낮은 문턱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봉사활동, 마을 기업 참여, 혹은 당사자 발굴단 등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 에너지를 환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선택권 제공을 통한 동기 유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실무자를 위한 Tip!

◎ 거부유형을 관통하는 연결 핵심원리

- ✓ 행정적 개입보다 관계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서적 안전감이 확보되어야 서비스 개입이 수용될 수 있음

◎ '어떻게 어느 순간에 연결되었는가?': '연결의 경험'에서 연결이 촉발되는 순간과 과정

단계	연결의 과정
[1단계] 누군가 온다	•이/통장·고시원 총무·사회복지사 •조용한 일상의 방해꾼인 방문자 •비공식적인 관계망의 누군가의 방문으로 거부와 고립의 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균열의 시작 단계 •1단계는 '우연·경로 의존적 연결'을 말한 -자발적 접근이 아닌 주변 누군가의 우연적 접촉이 단초가 됨 -이것이 결정적 전환점(turning point)이 됨 -연결의 1차 계기는 대체로 비공식적 자원에 의함
[2단계] 반복해서 온다	•반복 방문과 '미안함'이 문을 연다 -'미안해서' 문을 연 순간은 방문 횟수가 반복되었고, 상대의 태도가 꾸준한 관심으로 쌓였을 때 발생함 •반복 방문·관계 형성 기반의 '서서히 열림'
[3단계] 초대에 응하다	•행사·모임·공방·여행 •거부와 단절 상황에서 초대에 응하고 지원을 받아 공적 사적 자원에 연결되기 시작하는 상황 •지속적인 문자나 방문 안내가 유인이 되고, 심각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
[4단계] 느슨한 참여의 시작	•느슨한 참여: 따로 또 같이 •깊은 관계는 거부하지만, 단체 활동은 수용함 •'진짜 친구'는 싫지만, 가벼운 인사동행은 괜찮은 상태에 머무름. 이 수준의 관계 설정은 복지기관이 '허용해 주는가' 여부가 연결 유지에 중요
[5단계] 동료이자 협력자로 변화	•빨래방·작업장·동아리 •'의무·역할·동료성'이 생기는 순간, 거부자들은 '수혜자'가 아닌 '함께 하는 사람'으로의 위치가 전환됨 •이때부터 복지기관은 '내가 도와주는 곳/내가 책임지는 공간'으로 의미가 바뀜 •활동·프로그램 기반의 재사회화 경험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 활동 구조가 효과적 -활동 → 소소한 성취 → 자존감 회복→관계확장

사회참여 유도 1단계 Tip!

- ◎ **끈기 있는 접근이 핵심:** 개입 거부 대상자들에게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
 - ✓ **지속적인 방문 및 담당자 일관성 유지:** 처음에 거부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노하우가 필요함. 어떤 고립이든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마음의 문이 열림**. 담당자 교체없이 일관성 유지하며 신뢰관계 형성
 - ✓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욕을 얻어먹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두드리고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
 - ✓ **최소한의 개입 횟수 확보:** 최소한의 방문 횟수를 정하여 **지속적인 방문**이 중요 (예. 2주 간격 10회 이상 방문하기, 초기 두세달은 매주 방문하기 등)
 - ✓ **결정적 순간을 위한 모니터링:**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을 열 마음이 생기는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후원품을 문 앞에 걸어놓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마지노선 모니터링 방법 중 하나임
 - ✓ **다음 일정 명확히 고지:** 거부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와서 뵈게요”와 같이 **다음 일정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면, 그 시간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음

사회참여 유도 2~3단계 Tip!

- ◎ **신뢰관계 형성과 일상으로의 복귀 돕기:** ‘의미 있는 연결고리’ 만들기
 - ✓ **비공식적 연결망 활용:**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관계망 활용 시 거부감이 현저히 줄어듦. 이웃 주민, 이/통장, 단골 구멍가게·편의점 주인, 또는 훈련된 동년배 주민 활동가는 대상자의 **일상에 녹아 있는 ‘연결자(Connector)’**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이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함
 - ✓ **낙인 없는 공간 활용:** ‘복지기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위축감과 낙인 효과를 피해야 함. 대신, 대상자가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도서관, 동네 빵집, 카페, 공원 등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일상의 공간에서 만날 때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
 - ✓ **관심사 기반의 접근:**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당사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작은 관심사**(예. 음악, 텃밭 가꾸기 등)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제안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

사회참여 유도 4단계 Tip!

- ◎ **사회참여 유도하기:** ‘역할 부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
 - ✓ **역할 제공:**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했을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참여 동기가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 **점진적 참여 유도:** 1:1 만남에서 시작하여, 소규모 모임,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참여의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법** 필요.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형성된 자기보호의 벽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계를 확장하도록 도움
 - ✓ **선택권 존중:** 일방적인 프로그램 선정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 목록을 제시하고 **스스로 직접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 스스로 선택한 활동일 때 내적 동기가 유발되며, 이는 무력감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통제감을 회복시켜 자존감 향상에 기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접촉 매개 물품(유인책)은 무엇이 좋을까요?

A1. 대상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호품/음식: 지역 상점 쿠폰, 라면이나 즉석밥, 커피 등을 활용. 특히 중장년은 금전적/재정적 지원이 매개 역할이 될 수 있음
- 반려동물 매개: 대상자 본인의 먹거리보다 **반려동물의 사료나 간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며, 반려동물 때문에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음

Q2. 대상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종결해도 되나요?

A2. 거부가 지속될 경우 '완전 종결'보다 '장기관찰 사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결보다는 1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재접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
- 사례 종결은 마지막 선택지이며, 관계의 끈을 가늘게라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임
- 종결 대신 **저강도·비대면 중심의 관계**(문자, 편지 등) 유지하거나 위험도 평가 후 **위기개입 가능성 확보** 필요(경찰, 119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과금 체납 등 위험요소 점검)
- 단, ①폭언·위협 등 실무자 **안전 위협**이 발생하거나(단, 타기관 재연계 병행), ②장기간(6~12개월) 명확한 **거부 의사** 지속 및 위험도가 낮거나, ③**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성공적 연계**를 완료한 경우 종결 가능
-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적 모델**: ①관계 미형성 단계→②약한 연결 유지 단계→③필요시 재개입(Rentry) 단계

Q3. 종결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종결을 하기 전 준비 절차와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종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종결 1~2주 전 종결시점을 사전 고지
- 그동안의 변화 및 성취를 확인하고 격려 및 정서적 지지 제공
- 자기 돌봄 전략 점검 및 위기 시 연락체계 안내
- 타기관, 자원봉사단체, 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안내하고 대상자의 동의하에 커뮤니티 멘토, 또래 지지자 연결 시도
- 필요시 재개입 가능성 설명 및 재개입 기준 공유
(예. 고독사 위험자 체크리스트 참고)

3 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시군구에서는 고독·고립 위험자를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로 구분하여 맞춤형 예방 서비스 제공·연계

* 지자체 인구구조 특성 반영 시 2개 이상의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수행

○ 생애주기 기준

구분	연령 기준	비고
청년	만 19세 ~ 40세 미만	지자체 조례 및 만혼 추세 반영(39세까지 포함)
중장년	만 40세 ~ 65세 미만	경제활동 주력기 및 조기 퇴직, 노후 준비기
노년	만 65세 이상	법정 노인 연령 및 은퇴기

○ 생애주기별 사업유형

구분	생애주기별 사업 유형
청 년	① (마음회복) 정신건강 문제, 자살위험 등 심리·정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상담 및 심리지원 제공, 고위험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신속 연계 ② (일상회복)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기본생활(주거, 식생활, 외출) 지원, 경제적 자립(취업 준비, 재정관리 교육) 지원, 사회복귀(정기적 멘토링, 비대면 단가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상황에 맞게 제공
중 장 년	① (관계개선) 퇴직·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 재구축을 위해 자조모임, 소셜다이닝·문화 체험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부담을 낮춘 소규모 방식으로 관계회복 지원 ② (건강관리)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중독관리,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복귀를 지원 ③ (경제자립)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솔루션(채무상담, 금융상담, 법률 서비스, 일자리 정보)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주거, 일자리 등) 연계를 통해 경제자립 지원
노 인	① (돌봄연계) 돌봄서비스(병원 동행, 집 청소지원,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를 제공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 ② (사회참여) 사회적 역할·소속감 상실로 고립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급 봉사활동 등) 기회 제공·연계 ③ (안전확인)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이웃연결단, 요구르트 배달 등) 활용 또는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체계 운영,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기기·장비 보급 및 응급안심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사업 유형(공통): 정기 안부확인(서비스 거부자 등), 사후관리(고독사 사망자)

- **(중복제공)** 동일인에게 사업 유형별 서비스 모두* 제공 가능

* (예시) 청년 위험군에게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회복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 **(유의사항)** ① 기존에 지방비 및 민간재원으로 동 사업의 해당 서비스를 고독사 위험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함 (실적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할 것(예산재원 명시))
②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지원 ③ 기 시행 중인 지자체 유사 사업과 정부 사업 간의 중복지급 제외 원칙

- 같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지원은 피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과·시너지 증대

* 타 사업 자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 적극 연계 검토

① 정기 안부확인 체계 구축

□ 개입 거부, 고립도 심화 등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기 안부확인 체계 마련

※ 안부 주기(주1회/격주/월1회 등)·채널(전화/문자/방문/비대면) 설정

① 인적 안전망 활용

- **(이웃연결단)**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hy프레스 매니저 등)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예산지원항목)** 인적자원망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보험료, 물품 구입비(음료(우유, 야쿠르트), 조끼, 명함, 뱃지 등) 등
- **(지출불가항목)** 타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참고사례: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

추진 배경	■ 주기적인 안부확인을 통한 관계형성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고 주민 스스로 함께하는 이웃지기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대상	대상		살핌이 필요한 고독·고립 가구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이웃지기 구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 활동가 모집 및 교육 ■ (방문 안부확인) 이웃지기와 고독사 위험군 1:2매칭, 주기적 안부확인 ■ (위기상황 즉시 대응) 고독사 위험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이웃지기 선발 (동, 구)	방문대상자 선정 (동, 구)	주기적 방문 안부확인 (이웃지기)	위기상황시 서비스 요청 (이웃지기→동)	위기상황 확인·관리 (동)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광주 돌봄정책과	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홍보		
	시군구	5개 자치구	안부살핌 대상자 선정, 이웃지기 참여자 선정, 활동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안내, 신청·접수, 현장확인, 지원대상 사후조사		
	수행기관	이웃지기단	주기적 방문, 안부확인, 사례회의 및 복지자원 연계		

< 참고사례: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나 함께 산다’ >

추진 배경	■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의 증가로 인하여 촘촘하고 새로운 민간협력 발굴 체계 구축		
사업 대상	대상		살핌이 필요한 고독·고립 가구
	분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류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집배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안부 살핌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선제적 발굴 ■ (주요내용) 안부살핌 택배 발송을 활용한 안부확인 및 위기정보 파악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고성군 (주민생활과)	사업수행지원
	읍면동	고성군 내 읍·면사무소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부재가구 및 소재파악 불가 가구 재방문
	수행기관	종합 사회복지관	복지택배 물품 구입 및 포장, 발송, 간담회 및 평가회 진행, 고위험군 발굴 시 사례관리 연계 및 추진
	연계·협력기관	고성우체국	계약 소포 대면 배송, 배달 결과 회신,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위험도 조사 및 결과 회신

■ 위기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 대응방법



※ 출처 : 관악구 복지정책과(2022), 관악구 고독사 고위험 주민 위기대응 매뉴얼

▶ 참고 5 병원 동행 상황별 대처방법

[구급대원이 병원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 구급대원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 환자의 인적사항, 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함 → 요청 가능한 협조사항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에 따라 동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거절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
- 다만 현장 담당자 판단 시 기준에 라포르가 형성된 대상자가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동행 가능
- 보통 생명·폭행 관련 및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등의 중한 사안은 경찰에게 동행을 요구 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나 의료비 지원 등의 사안은 필요하면 해당 병원에 자료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동행 불필요
- ※ 예외사항
 - (예시1) 동행을 요구받는 그 상황이 보호자가 꼭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일 경우
 - (예시2) 대상자가 자타의 위험성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
 → 사안에 따른 동주민센터 담당자 판단¹⁰⁾이 중요하며 필요시 동행함.
(5. 부록 관련 법률 참고)

[(병원에 동행한 이후) 병원으로부터 보호자(또는 연대보증인) 서명 및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

- 현장에 동행한 담당자의 판단으로 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함.
- 병원에서 보호자(연대보증인) 서명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비상상황 대응(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연락처를 남기고 복귀할 것
-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대상자의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병원에 연계해 주고, 의료비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 등 관련 서비스 연계
-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자의 병원비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보호자로 등록할 의무는 없음

10) 1인 독거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여 책임을 지는 일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및 팀장과의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향한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분산은 꼭 필요함.

②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 (내용) AI,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AI 안부전화, 스마트 플러그, 한전 AMI, 앱, 카카오톡 채널 등

※ 여러 가지 기기 혼합 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기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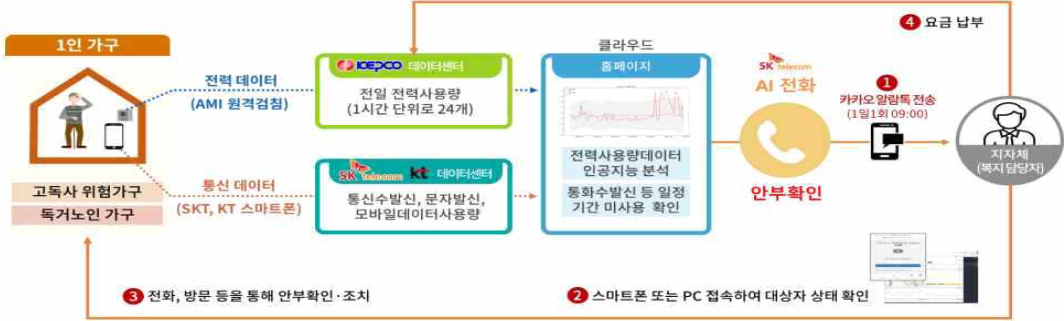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SK 누구돌봄케어콜 등
한전 AMI 살핌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으로 비대면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응 (한전:ON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스마트 플러그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원플러그에 연결하여 집안의 조도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 확인
앱(APP) 활용	고독사 위험자 개인 핸드폰에 지자체별 살피미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조작 감지. 지정시간 동안 조작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알림 문자를 지자체가 수신 시 긴급출동 및 보호조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이용하여 위기가구 비대면 발굴을 활성화

○ (예산지원항목) 기기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통신비 등

< 참고사례: AI 안부전화 >

추진 배경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대상	고립 위험이 있는 전국민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AI를 활용한 24시간 안전 네트워크망 구축(AI-관제센터-응급출동)			
	■ AI 보이스봇 통화로 주기적인 안부 및 안전여부 확인, 건강상태, 돌봄필요도 등 체크			
	AI → 대상자	AI ↔ 대상자	업무담당자	읍면동 안부확인 담당자
	① AI 전화 발신 · 등록된 요일/시간에 주1회 전화발신	② 대상자 안부확인 질문 / 응답 · 운동, 건강, 식사, 불편사항 등	③ 전체 수발신 결과 확인	④ 미수신·주민요청사항 확인 및 상담 · 안부확인 및 복지상담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광주 돌봄정책과	돌봄체계 구축	
	시군구	통합돌봄과	제공기관 연계, 비용 정산 등	
	읍면동	97개 동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수행기관	네이버클로바 등	AI 활용 자동 발신 및 모니터링	

< 참고사례: AI 안심울타리 사업 >

추진 배경	1인 가구 및 고령층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및 대지텔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 해소		
사업 대상	대상	고독사 우려가 있는 중장년, 노인 등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전기·통신·휴대전화 사용패턴 파악 등 AI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징후 조기발견 및 비상시 현장 출동 등 즉각 대응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김해시(생활보장과)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추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대상자 사후관리
	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AI 빅데이터 수집 및 제공
		행복커넥트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제공
	연계협력기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연계

청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① 마음회복

- (주요 내용) 정신건강, 자살 위험 등 심리·정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심리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연계
 - 고위험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 연계 등 위기 개입을 강화
- (예산지원항목) 심리상담 강사료, 대관료, 상담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상담 물품, 문구류 등), 사후관리를 위한 통신비 등

< 참고사례: 반려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 >

추진 배경	■ 취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증가		
사업 대상	대상	청년 고독사 위험군 (19세~39세)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내용) 훈련된 반려동물과 전문가가 방문하여 산책, 교감 놀이 등을 체험함으로써 우울증 감소, 정서 안정 지원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대전 복지정책과	보조금 교부 및 사업총괄
	시군구	복지정책과	계획수립, 예산 집행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공모 선정	사업추진
	연계·협력기관	37개거점복지관	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 참고사례: 광주청년센터 운영(청년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추진 배경	■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일상 안정화 도모		
사업 대상	대상	마음건강 상담을 희망하는 광주청년(19세~39세)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내용) 마음건강(심리) 전문상담 및 긴급지원(진료, 약제비 등) - 마음건강상담소 선정 및 정책교육, 상담 지원(1:1 맞춤형 심리상담) - 상담을 통해 정신과 진단 지원 및 긴급 약물 처방 지원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광주 청년정책과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총괄지원
	수행기관	광주청년센터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직접추진

② 일상회복

- (주요 내용)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기본생활(주거·식생활·외출) 지원, 경제적 자립(취업 준비·재정관리 교육) 지원, 사회복귀(정기 멘토링, 비대면·단기·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대상자 상황에 맞게 제공
 - 비대면·익명 접근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참여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전환으로 단계화 진행
 - 1인 가구 여부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 동거 상태의 고립도 포함하여 지원
- (예산지원항목)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미용실, 빨래방, 편의점 등), 재정관리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교재 제작, 강사료, 대관료 등), 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야외활동, 문화체험 등) 운영을 위한 교통비, 식비, 티켓 구입비 등

< 참고사례: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 >

추진 배경	■ 고립은둔 장기화로 일상생활 기능 저하, 정서적 고립 심화로 일상회복·관계망 형성·사회복귀 지원 등 체계적 지원 필요			
사업 대상	대상	인천시 거주 고립은둔 청·중장년		
	분 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목적) 고립 은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외부활동 참여와 회사생활 체험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일상회복 지원			
	■ (사업내용) 일정시간 퇴근 미션,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독려			
	■ (추진체계)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일상회복 지원	개인별 목표수립
	24시간상담콜 외로움대응단 관련 유관기관	⇔ 고립은둔 척도 측정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일상회복, 심리치유 사회관계 기술 등 프로그램 제공	⇔ 주간계획수립 참여 독려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참여 등 사회복귀 지원
추진체 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인천 복지정책과	공모, 예산 교부, 점검 및 평가	
	수행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 참고사례: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

추진 배경	■ 사회적 고립 및 은둔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정책제안 활동지원 및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고립은둔 청년 발생 예방 필요		
사업 대상	대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고독사 위험군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① 청춘터전: 민간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10여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청년공간을 운영중인 단체 또는 법인 - (지원내용) 상시 개방형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임대료, 사업비 등 지원		
	② 청년 아카데미: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청년멘토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대전시에 소재를 두고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할 단체 또는 법인 - (지원내용) 학과 운영비 지원		
	③ 청년커뮤니티 지원: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여건 마련 및 모임 조성 - (지원대상) 대전청년으로 구성된 7인이상의 비영리 모임 - (지원내용) 사업콘텐츠를 고려하여 활동비 등 지원		
	④ 청년의 밤 개최 - (참석대상) 대전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및 청년 - (주요내용) 활동 유공자 표창 및 한해 성과공유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대전청년정책과	사업운영 지원
	수행기관	대전청년내일재단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 운영 등

중장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① 관계개선

- (주요 내용) 퇴직·실직 등으로 축소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소셜다이닝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참여 부담을 낮춘 소규모 방식으로 관계 회복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시>

- 자조모임, 대안적 가족공동체 형성 지원
- 문화활동(요리, 독서, 꽃심기 등 취미 활동)
- 식사지원(커피모임, 점심모임 등)
- 체육활동(걷기, 운동, 자세교정 등 생활체육 활동)
- 역량강화교육(물품정리 등 생활개선, 키오스크 사용법 등)

- (예산지원항목) 자조모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물품 구입비, 다과비, 입장료 등)

< 참고사례: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사업 >

추진 배경	■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		
사업 대상	대상	40~60대 여성 1인가구	
	분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류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여성 1인가구의 고독·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함께하는 문화 활동으로 친목 도모 지원 ■ (주요내용) - 40~60대 여성 1인가구 대상 동아리 활동 지원 • 산(山)&섬(島): 산과 섬 탐방 트레킹 동아리 • 여·가·부(여성 1인가구 부럽지!): 공연, 공예 등 문화생활 체험 동아리 • 동아리 석류: 건강음식 체험 등 갯년기 극복 동아리 - 여성 1인가구 워크숍(1인가구 전체 모임, 나들이) 진행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사천시(여성가족과)	사업총괄 보조금 교부
	수행기관	사천시가족센터	대상자 모집 등 사업 수행

② 건강관리

- (주요 내용)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중독관리,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복귀를 지원
- (예산지원항목) 중독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등), 건강검진 지원 비용, 생활개선을 위한 운영비(교육비(정립 수납 등)) 등

< 참고사례: 알코올 중독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응 '한발짝 한걸음' >

추진 배경	■ 중독이나 재가 정신질환자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례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	대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주요내용)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질환자 및 재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운영 프로그램) 케어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푸드테라피 등 ■ (추진절차) 대상자 접수 ▶ 대상자 선정 ▶ 프로그램진행 사회적 고립 위험 대상자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등 ▶ 초기상담 개별 상담 및 프로그램 안내 ▶ 일상훈련프로그램 참여 문화체험 마무리캠프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양평군 복지정책과	프로그램 홍보 및 추진 계획, 사업 지원
	읍면동	읍·면사무소	사례관리, 고독사 위험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프로그램 진행, 추진

③ 경제자립

- (주요 내용) 연체·체납, 주거 수준 하락, 퇴거 위험, 실직·소득 단절 등 취약한 부분의 맞춤형 솔루션(채무·금융·법률 상담, 일자리 정보·체험)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주거·고용 등)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
- (예산지원항목) 채무·금융·법률 상담 지원 비용(강사비, 인쇄비 등), 일자리 체험·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소액의 연체·체납* 비용 등

* 긴급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중복지원 금지

< 참고사례: 중장년지원센터 운영 >

추진 배경	■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핵가족화 영향으로 고독사 위험군인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 필요		
사업 대상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50~64세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에게 상담·교육·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회복과 경제자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 고독사 위험을 예방 ■ (사업기관) 대전중장년지원센터 ※ (공공위탁) 대전사회서비스원('23.7~) ■ (주요사업) 중장년 직업훈련교육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나눔 일자리 등 중장년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에 기여 ■ (추진방향) - 중장년의 활기찬 삶을 위한 일자리 관련 개인 맞춤형 종합상담 제공 - 상담 후 중장년 직업훈련개발 교육을 통한 소득 중심의 재취업 연계 - 교육수료 후 나눔일자리 및 취업 연계로 삶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장년의 문화조성을 위한 건강·문화·여가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대전 노인복지과	중장년지원센터 지원
	수행기관	대전 중장년지원센터	직업훈련개발, 일자리 발굴, 상담 등

노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① 돌봄연계

- (주요 내용) 병원 동행, 집 청소지원,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
- (예산지원항목) 병원 동행자 교통비, 저장강박 집 청소비, 도시락·반찬 배달비 등

< 타 사업 연계사례: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추진 배경	■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 증가 및 가족돌봄 약화, 돌봄의 사회화 요구 증대		
사업 대상	대상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분 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개인별 돌봄·욕구정도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참여·일상생활지원 등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회복 지원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1개월 단기서비스 제공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부산 노인복지과	사업총괄
	시군구	16개 구군 노인복지부서	수행기관 지원 및 사업추진
	수행기관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45개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16개 구군 수행기관(45개소)	사업수행 및 대상자 지원

② 사회참여

- (주요 내용) 사회적 역할·소속감 상실로 고립된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급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연계하여 소속감 형성 등을 지원
- (예산지원항목) 봉사활동비(식비, 교통비, 운영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타 사업 연계사례: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 사회관계 회복		
사업 대상	대상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활동비 지급 -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노인취업지원 4가지 유형 추진 ■ (수행기관) 100개소 ■ (사업규모) 연간 75,000명 ■ (시행주체) 시군 및 수행기관 ■ (수행체계) 보건복지부 시도 사업량 배정 - 도·시군 사업량 배정 및 도 단위 사업계획 총괄 - 시군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 도 사업계획서 승인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경상남도(노인정책과)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 승인
	시군구	노인복지부서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수행기관	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참여자 모집, 사업 추진
	연계·협력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규사업 개발, 종사자 교육 등

③ 안전확인

- (주요 내용)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이웃연결단, 요구르트 배달 등) 또는 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화재,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기기·장비보급 및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필요시 인지저하·권익침해(사기·학대 등) 위험 징후를 확인하고 사례관리, 학대 대응, 후견 등 권익지원 체계로 연계 강화
- (예산지원항목) 이웃연결단 활동비(교통비, 식비, 보험료), AI 기기, 화재감지기 등 기기 구입비, 안전바 등 낙상방지 용품, 통신비 등

< 참고사례: 국민안심서비스 앱 >

추진 배경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초동대처에 대한 필요성 대두		
사업 대상	대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사업목적)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작동(터치)이 없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람과 문자를 전송하는 앱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고독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구성 국민안심서비스 앱 지정 시간 동안(12시간, 변경 가능) 스마트폰 작동(터치)이 없는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 ※ 개인 정보는 별도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 등록된 보호자 알림 및 문자로 위치정보 자동수신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합천군(행정과)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
	읍면동	전 읍면	전읍면 복지담당자·본청당직실(야간) 문자 수신

< 참고사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

추진 배경	■ 대면 안부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인력을 통한 안부확인의 한계 보완		
사업 대상	대상	고독사 위험 노인 1인 가구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지원내용) 대상자의 통화이력 모니터링 및 자동 ARS를 통한 안부확인 - 대상자의 통화 이력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 일정기간 통화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 안부전화(ARS) 발신 → 미 수신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요청 알림 통보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대전 복지정책과	사업 총괄
	시군구	대덕구 생활보장과	사용자 권한발급 및 시스템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발굴
	협력기관	(주)루키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타 사업 연계사례: 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

추진 배경	■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사업 대상	대상	65세 이상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 필요 노인	
	분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가정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설치로 소방서, 응급관리요원 등 연계 365일·24시간 안전확인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가구내 장비(5종) 기능 및 역할> ① 화재감지기: 댁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가 연기 감지해 119 상황실 자동 신고 ② 응급호출기: 화장실(침실)에 설치해 낙상 등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신고 ③ 활동량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 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④ 출입문감지기: 대상자의 출입문에 개폐 여부 감지(외출, 재실 등) ⑤ 게이트웨이: 영상전송단말기(응급호출 기능, 영상통화, 생활정보제공, 동영상 제공)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도	대전 노인복지과	기초, 광역지원기관 지원 및 관리·감독
	시군구	노인장애인과	응급 지역센터 운영·관리·감독, 대상자 승인, 발굴 및 홍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신청·접수) 및 센터 연계
	수행기관	5개 지역센터	대상자 안전확인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장비 관리 및 보고
	연계·협력기관	광역지원기관	지역센터 업무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원, 디지털돌봄시스템 관리,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소방청(소방서)		응급 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 수행	

③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 유품정리, 특수청소

- (주요 내용) 고독사 위험자 또는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민법상 상속·유품정리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또는 상속의 법적 처리가 필요 없는 오염물 제거에 한해 지원
 - 타 사업에서 동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을 우선 연계 검토(일회성 서비스보다 고독사 예방사업 우선 지원)
 - 10월 15일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해당 예산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중 타 유형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집행 가능
- ※ 무연고 사망자 증빙자료: (예시) 사망진단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 위험요청서,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협조 요청 공문 등

< 참고사례: 고독사 사망자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추진 배경	■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 추세에 따른 유품 정리 서비스 수요 증가 ■ 가족의 돌봄 없이 사망한 자의 사후 현장 처리 문제 및 주변 인식개선 필요		
사업 대상	대상		주변 이웃과 단절된 채 고독사로 발견된 법정 저소득층
	분 류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전생애 (전국민)
		가구특성	☒ 1인 가구 ☐ 돌봄필요가구 ☐ 기타 ☐ 해당없음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 고독사 ※ 민법상 상속자가 없고, 법적상속 문제가 없는 경우 ■ (주요내용) 사후 공간·유품 정리, 특수청소(방역 포함)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족 → 지원대상자 결정 복지정책과 → 서비스 지원 유품정리길잡이 (가구 방문) → 활동비 지급 복지정책과→ 유품정리길잡이		
추진 체계	구분	기관(부서)명	역 할
	시군구	광주 동구 복지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추천
	수행기관	특수청소 업체	특수청소 및 방역 활동

□ 동 행정복지센터 고독사 사후 행정처리 대응방법

▶ 참고 6 사후 행정처리 대응방법

[강제개문 진행 이후 행정절차(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또는 지원하는 제도)]

- ※ 원칙적으로 구조요청의 경우 신고자가 지인 또는 건물관계자(건물주, 관리인 등)인 경우에는 강제개문 시 파손이 발생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개문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며, 제3자 신고 시에는 보상이 가능함
- ※ 또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개문이 가능하며 손실보상의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제개문 시 반드시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대동해야 함
- ※ 부득이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하는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동별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면 됨
- 경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1조 2(손실보상)에 근거하여 응급사항이나 위기사항이 예상되어 문을 강제 개방했을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5조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함
- 동주민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고독사 위험 가구 특별지원”
- ※ 소방서, 경찰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후속지원방안
 -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 참고 7 고독사 현장과 사망확인자 사후관리

-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2)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최초발견자의 42.3%가 공적 관계망(공무원 14.9%, 사회복지사 5.6%,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제공자 14.9%, 자원봉사자 및 통장 7%)로 나타났다
- 최초 발견과 대처 관련 교육과 대응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과 안내 필요
- 최초발견자의 사망목적과 관련된 트라우마와 우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모니터링, 휴식, 적절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4 기타 사업

□ 앞서 소개한 사업 유형 외에 다른 모형의 사업 추진 가능

- 고독·고립 예방을 위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가능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거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로 명시된 경우 관련 사업 추진 가능

- (법) 제13조, 제16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2-2-②)

- 사회복지관(475개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사회복지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을 확대 반영('24년~'26년)

-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활동** 실시(부산 북구)

- 사회적 고립가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공동체** * 등 형성 지원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경제·돌봄 등)를 **공동으로 대처**

* 각종 법·제도적 권리·책임 바탕으로 엄격한 결합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2~5인)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바탕**의 느슨한 가족 결합 형태로 추진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4-1-①)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 기관** 지정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

※ 서울시는 '23년부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內)' 설치·운영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 (예시) '사회복지관(475개소)', '가족센터(244개소)',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기타사업 모형의 필요성,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30% 이내로 함

5 사업 홍보

□ 사업 홍보 추진

- (사업 홍보) 키 메시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예방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업 홍보 추진

※ 생애주기별 키 메시지

대상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국민
주요 홍보 메시지	혼자여도 괜찮아. 함께면 더 든든하지	힘들 때 기대는 것 그게 사람사는 거죠	자주 찾아봐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성	청년의 '자립독립'을 존중하고 관계·연결 필요성 제시	도움 요청에 대한 거부감·죄책감 완화	방문을 부담이 아닌 정서적 연결의 기회로 재해석	인사-안부를 묻는 의미와 행동을 유도 하는 이중적 의미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일반국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홍보 예산)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로 함
- (예산지원 항목) 동영상·전광판·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 인쇄물·홍보물 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등

참고

키 메시지 활용한 생애주기별 홍보 포스터

□ 키 메시지

- (사업 홍보) 지자체(시군구)에서 고독·고립 예방사업 홍보 시 사업의 통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키 메시지 활용 가능

□ 홍보 포스터 시안

- (시군구명) 사업 홍보 포스터에는 사업 수행 시군구명 외에도 보건복지부를 함께 명시*할 것
 - * 보건복지부(필수) + 시군구명
- (사업내용) 시군구는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의 주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수정할 수 있음

“혼자여도 괜찮아, 함께면 더 든든하지” 사업명 ○○○○○○ 사업 대상 •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19세~39세)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반영 가능 위기심할 서비스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혼자여도 괜찮아, 함께면 더 든든하지” 사업명 ○○○○○○ 사업 대상 •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19세~39세)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반영 가능 위기심할 서비스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내 주체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시안1) 청년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시안2) 청년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사업시행 시군구명 변경 가능

“힘들때 기대는 것, 그게 사람 사는거죠”

사업명 ○○○○○○

사업 대상 •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군(40세~64세)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변경 가능

위기상황 서비스 내 복지하기 알림 앱 설치하기 알림 앱

일반 국민 누구나 본인, 이웃의 복지 행위를 쉽고 빠르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복지하기 알림 앱(App) 설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QR 코드 촬영) 후 회원 가입)하고 알림 창기 설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내이웃에 대한인내 복지정보 / 알림

(시안1) 중장년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거제시

사업시행 시군구명 변경 가능

“힘들때 기대는 것, 그게 사람 사는거죠”

사업명 ○○○○○○

사업 대상 •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군(40세~64세)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변경 가능

위기상황 서비스 내 복지하기 알림 앱 설치하기 알림 앱

일반 국민 누구나 본인, 이웃의 복지 행위를 쉽고 빠르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복지하기 알림 앱(App) 설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QR 코드 촬영) 후 회원 가입)하고 알림 창기 설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내이웃에 대한인내 복지정보 / 알림

(시안2) 중장년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군산시

사업시행 시군구명 변경 가능

“자주 찾아봐어도 괜찮을까요?”

사업명 ○○○○○○

사업 대상 • 노인 고독·고립 위험군(65세 이상)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변경 가능

위기상황 서비스 내 복지하기 알림 앱 설치하기 알림 앱

일반 국민 누구나 본인, 이웃의 복지 행위를 쉽고 빠르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복지하기 알림 앱(App) 설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QR 코드 촬영) 후 회원 가입)하고 알림 창기 설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내이웃에 대한인내 복지정보 / 알림

(시안1) 노인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안동시

사업시행 시군구명 변경 가능

“자주 찾아봐어도 괜찮을까요?”

사업명 ○○○○○○

사업 대상 • 노인 고독·고립 위험군(65세 이상)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

※ 개별 시군구 사업으로 변경 가능

위기상황 서비스 내 복지하기 알림 앱 설치하기 알림 앱

일반 국민 누구나 본인, 이웃의 복지 행위를 쉽고 빠르게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복지하기 알림 앱(App) 설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QR 코드 촬영) 후 회원 가입)하고 알림 창기 설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내이웃에 대한인내 복지정보 / 알림

(시안2) 노인 대상 사업 홍보 포스터

Ⅲ. 주요 연계가능 서비스

* '23. 5월 수립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의 2026년도 시행계획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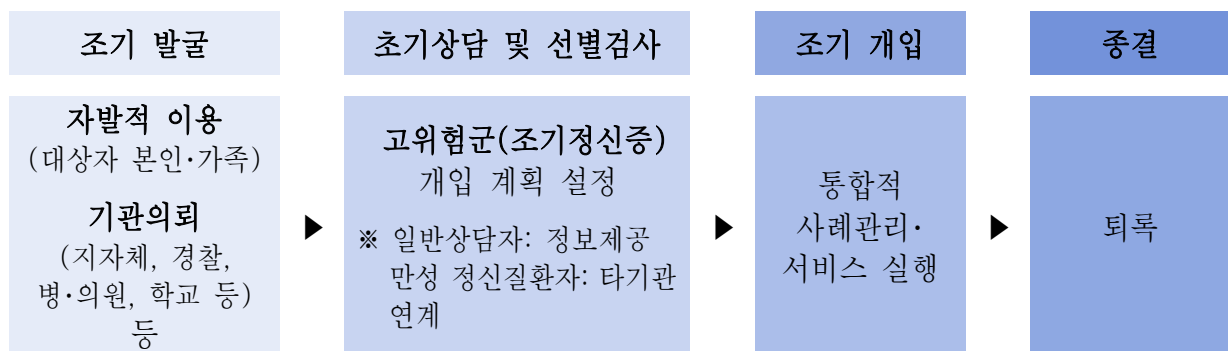
* 지원분야: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및 사업내용을 근거로 분류

서비스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분야*									기관
		경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주거	일상 생활 (돌봄)	일자 리	관계	안전	문화 · 여가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			○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청년			○				○			보건복지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				고용노동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 중장년					○					보건복지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						○				고용노동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노인		○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장애인		○						○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업	전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전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체			○							보건복지부
문화로 치유	전체									○	문화체육 관광부
온가족보듬사업	전체							○			성평등가족부
AI기반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	전체								○		국가보훈부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
- **(대상)**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만 19~34세**)
 - *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등 조현병 범주장애 / 우울장애(F32~34), 불안장애(F41)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치매, 지적장애 제외)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15~19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가능
- **(내용)**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발굴,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신건강 진료연계 지원 등
 - *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약물투약 관리지원, 또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 업무 흐름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지자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	https://blutouch.net/maumhada/	02-3444-9934
부산 진구	http://www.youngmind.or.kr/	051-710-2661
대구	https://www.youthdgmhc.or.kr/	053-565-2030
인천	https://www.청년마음으로.kr/	032-212-1934
광주	http://www.mindlink.or.kr/	062-267-3120
대전	https://www.djyouthmindlink.co.kr/	042-471-1535
울산	https://www.usmindlink.or.kr/	052-223-1534
세종	http://www.sjcmhc.com/	044-865-4597
경기 남양주시	http://www.ncmhcyouth.or.kr/	031-592-5893
강원 춘천시	http://www.youthforest.org/	033-242-7574
충북	https://www.cbmind.or.kr/	043-217-0597
충남 아산시	http://www.ayml.net/	041-547-5580
전북	https://youth.jbmhc.or.kr/	063-270-9700
전남 순천시	http://www.scmindlink.or.kr/	061-811-0130
경북 포항북구	http://phmindlink.com/	054-270-4767
경남	http://www.minddandi.or.kr/	055-286-1008
제주	http://www.jejumind.or.kr/	064-717-3051~5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정신증이 의심되거나 진단 5년 내인 경우 인근 청년마음건강센터로 의뢰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2,388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 02-2204-0329

□ 전담지원체계 구축

- 2년간('24~'25) 4개 시·도 대상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수행하였으며,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중

* 26년 4개소 추가 공모 예정

- 4개 지역 내 역량 있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청년미래센터'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이 밀착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전담창구 운영) 고립·은둔 정도를 측정하는 간편 자가진단 기능 및 상담 신청 기능 탑재(www.mohw2030.co.kr)
 - (오프라인) 청년미래센터 및 시군구-읍면동 신청, 읍면동 신청 접수 시 청년미래센터로 신청서 전송
- (지원내용) 전담 발굴 및 맞춤형 일상회복 서비스 제공
 - (고립 정도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제공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자립시까지 지속관리
 - (공동생활 프로그램) 혼자서는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청년 대상, 또래와의 공동생활(숙식) 등을 통한 일상 회복 지원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은둔청년 특화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 낮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간단한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2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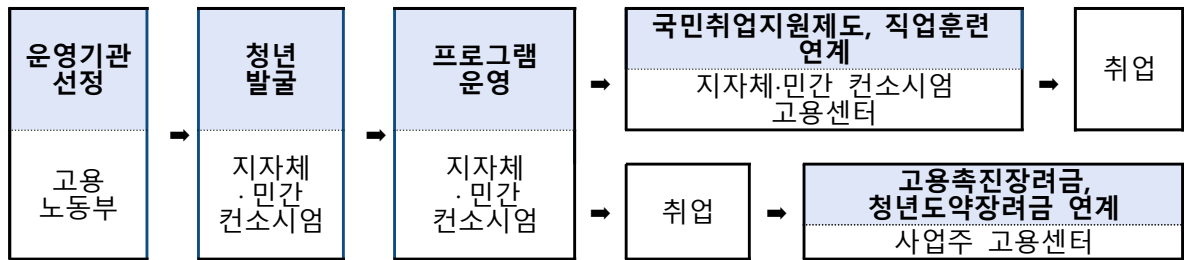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취업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사업근거) 구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같은법 제8조의 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18세~34세)
 -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주요내용)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대상 구직의욕 제고 등 회복 프로그램 제공(참여수당, 인센티브 지급) → 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①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③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공통)	
밀착상담	[기초·수시] 구직단념청년과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 복합적 요구 파악
사례관리	[슬기로운 독립생활] 건강·금융 등 사회적응 지원,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소개
자신감 회복	[이제는 나답게] 성격유형검사 및 이해를 통해 자기 이해 증진 [일상에 초록 한 줌 더하기] 트레킹을 통해 자기 효능감 찾기
진로탐색	[나만의 N잡] 나의 N잡 로드맵 작성하기
취업역량	[취업할 결심2] 자기소개서 작성 심화 및 실습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등 추가 운영(중장기 프로그램)	

□ 추진체계

- (사업 주체)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 (시행 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사업비 80%, 지자체 20%)
- (추진 절차)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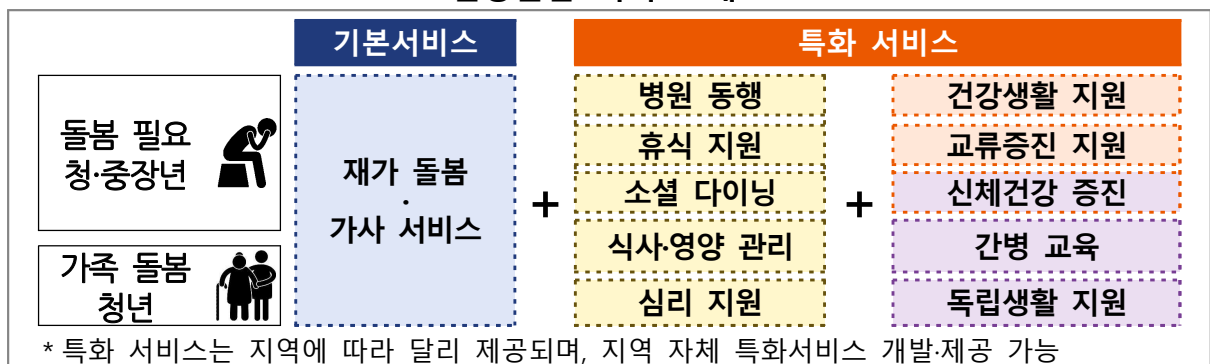
□ (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 및 청·중장년 등의 수요에 대응해 재가돌봄,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23.8.~)

□ (내용)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3~64세)과 ②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 (주요 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이용한도)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유형 >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 (기본 서비스) 월 44만4천원 ~ 136만8천원(이용시간에 따라 다름)
- (특화 서비스) 월 12만원~ 27만2천원(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는 소득구간별 0~30% 차등 부담,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하는 100% 자부담(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부담률 5%p 경감)

□ 사업 참여 지역: 17개 시도 220개 시·군·구 참여 예상

* '26년 사업 참여 시·군·구는 아직 확정 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 02-2271-9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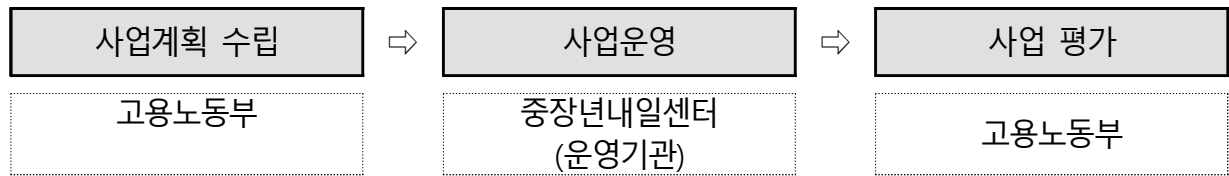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40대 이상 중장년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
- (사업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사업대상) 40세 이상의 중장년 및 고용(예정) 사업주
 - 퇴직 준비, 신속한 재취업 등 이전직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이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별도 선별하지 않음
- (주요내용)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퇴직예정자 및 구직자)이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1:1 심층상담,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층상담 도입
 - 고용복지+센터 입주 「중장년전담창구」에서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 (심층상담·맞춤형 프로그램·취업알선 등)」제공
 - (주요 프로그램)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를 돕고, 재취업 동기부여, 구직기술 등 습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 추진체계

- (사업 주체) 전국 38개 중장년내일센터(노사발전재단 등)
- (시행 방법)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추진 절차)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514

6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개별 욕구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

□ 서비스 대상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서비스 내용

-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 044-202-3582

□ 목적

- 지역사회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요양 진입 지연·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5년 55만명 → '26년 57.6만명**)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 일반군(52.1만), 중점군(4.5만),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설(1만)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특화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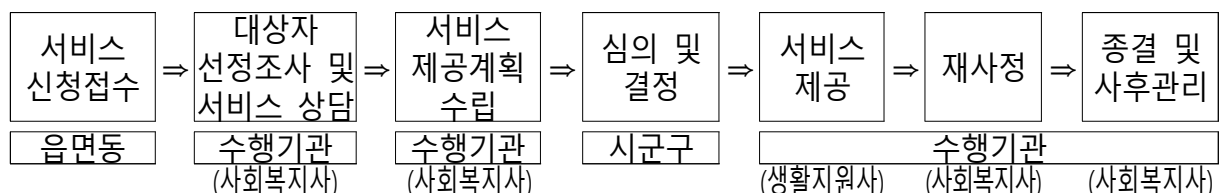
* 대상자가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으며,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최대 2개월, 월 44시간 이하)으로 구분하여 제공됨

- ▶(안전지원) 안부확인(전화,방문,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 ▶(사회참여지원) 사회참여 활동(사회관계·평생교육·여가문화), 자조모임 활동
- ▶(생활교육지원) 신체영역 활동(영양·보건·건강교육), 정신영역활동(우울예방·인지활동)
-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식사·청소관리)
- ▶(특화지원) 사례관리 서비스(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 우울 등 취약노인
-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영양·가사·동행)
-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제공체계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노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 684개소)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일 8시간 근무, '26년 월 급여 248만원, 0.3만명)
- (생활지원사) 직접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일 5시간 근무, '26년 월 급여 143만원, 3.6만명)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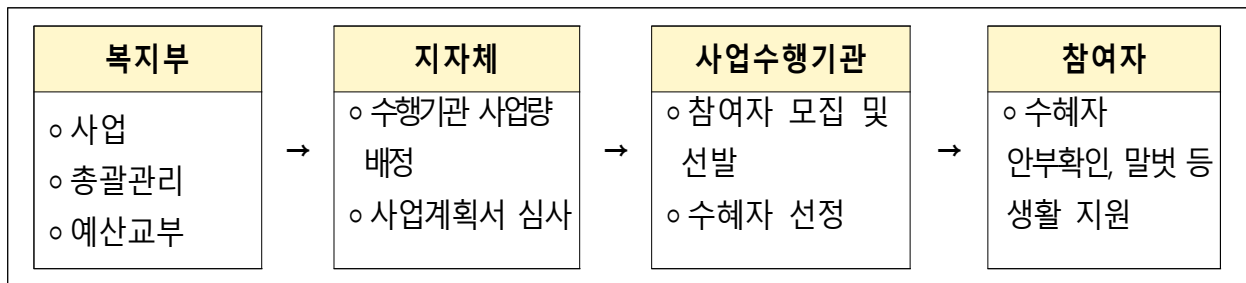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3461
	중앙 노인돌봄 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 ☎ 1661-2129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등 제공
- (제공자 기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돌봄대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 중 보호 필요도에 따라 우선 지원 알림이 전송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 등 안부확인 실시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 업무 흐름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약 1,330개소*

* 노인복지관(302개)·대한노인회(207개)·시니어클럽(212개)·종합사회복지관(181개) 등

□ 연계방안

-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가 독거노인 등 말벗,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 031-8035-7541~7549

□ 사업 목적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 (노인) 독거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노인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 1인·2인에 따라 독거가구, 2인가구와 기준 동일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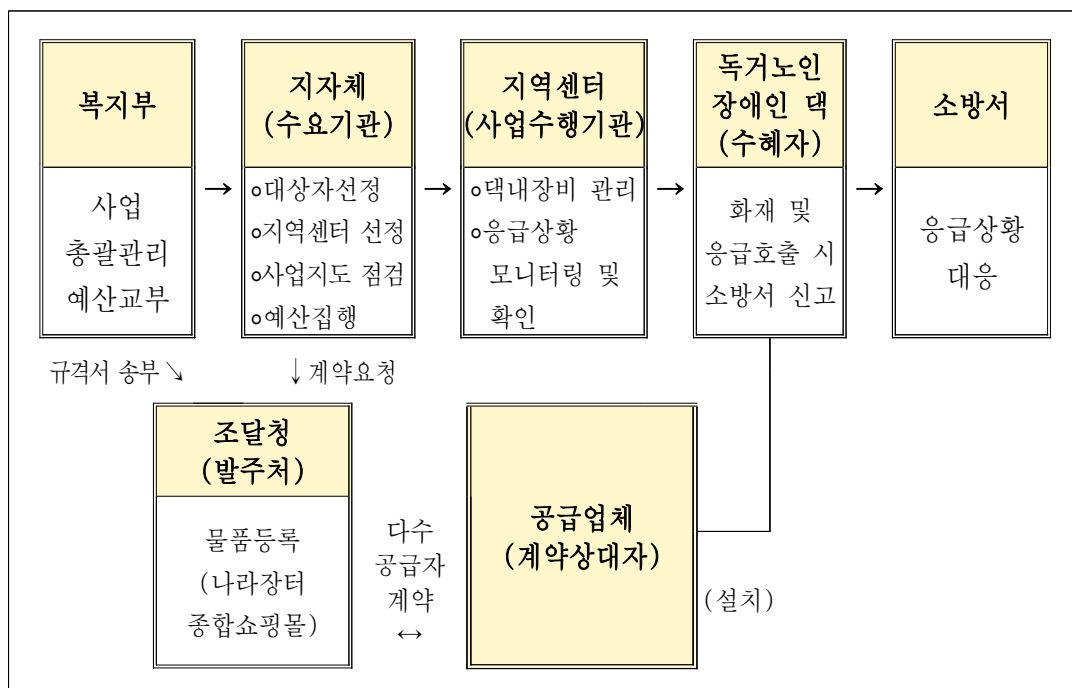
- (응급상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발생)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곧바로 연결
 - (응급호출)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응급상황 시 간단히 119 연결
 - (활동미감지) 일정시간(1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으로 알림이 전송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 등 안부확인 실시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택내 설치 기기>



□ 업무 흐름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대상(단, 서울 및 일부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에게만 제공)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디지털돌봄시스템(<https://biz.dcare.go.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3454, 3457, 3458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7-1

10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 목적

- 지역 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장기요양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서비스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필요
 - ** 1~3등급 장기요양등급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나 보건소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징)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 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대상자 분류)에 따라 건강행태 및 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필요시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분류기준 및 방문횟수 >

군 분류	대상자	방문 횟수
집중 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만성질환자) - 장애인으로 건강문제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건강위험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 - 고위험 허약노인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8회 이상/ 3개월
정기 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1회 이상/ 3개월
자기역량 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1회 이상/ 6개월

□ **업무 흐름도**

○ 보건소(수행기관) 업무 흐름

- 대상자 발굴·등록 → 건강문제 스크리닝(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서비스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263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본청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의뢰된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후, 추가 건강기초조사(노인 허약판정 등) 실시
- 통합사례관리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참석 협조하여 고독사 위험자 대상 사례관리 실시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2, 2812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령화대응부 ☎ 02-3781-2220, 2222
방문건강관리사업 (시스템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사업정보부 ☎ 02-6360-4768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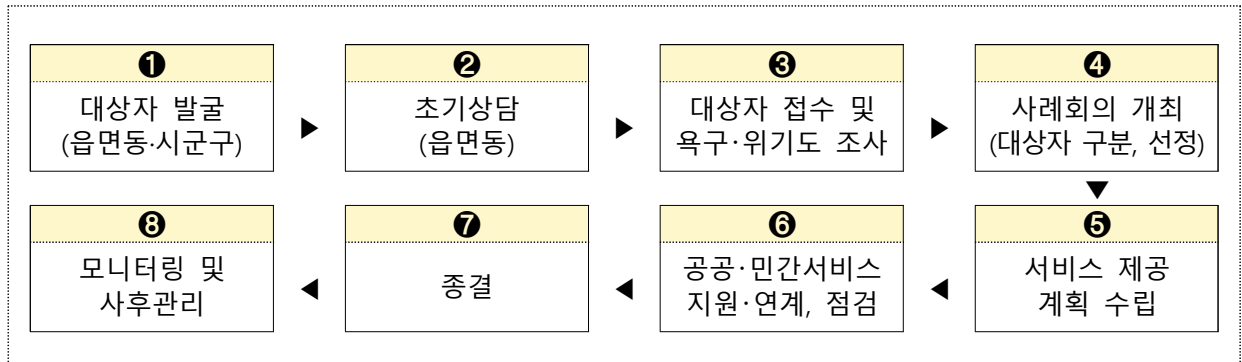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가족돌봄청년 등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및 일상 회복이 필요한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차상위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서비스 내용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지원

□ 서비스 흐름도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수행
 - * 고난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진행



☐ 사업 대상지역 (또는 참여기관)

-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고난도 사례)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4, 3133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 (해당 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 출소하여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지역별로 기준금액 차등 적용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60,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

□ 긴급지원 종류별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 역 \ 가구원 수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월)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기간) '24.7.1~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대상자 기준 >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⑥ 재난 피해자
※ (증빙서류) 피해사실인정확인서 혹은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인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3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5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서비스 제공 절차

-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함
-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 사업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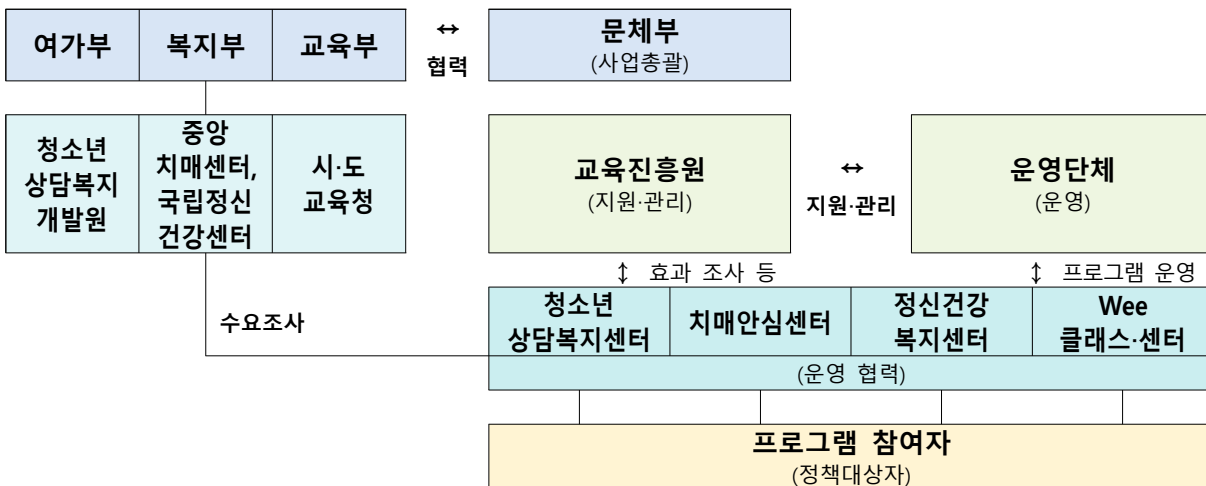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87

14 문화로 치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심리 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문화기본법 제5조
- (사업대상) 심리적·정서적 상처 및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일반국민
 - 수혜대상 전문 시설과 연계*, 치유가 필요한 대상 추천·발굴
- * Wee클래스·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주요내용) 심리적·정서적 상처, 외로움·고립감 등 치유가 필요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 사업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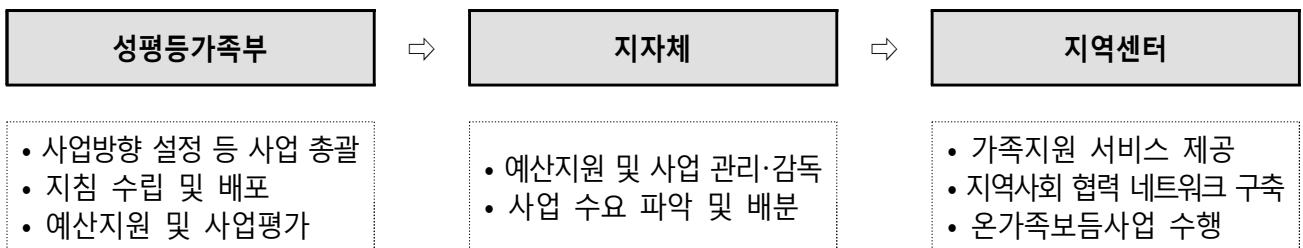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화로 치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044-203-2766

15 온가족보듬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 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도모
-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2의2,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사업대상) 1인 가구, 노부모부양가족, 조손가구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지원 가능
- (주요내용)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가족센터(232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 추진체계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6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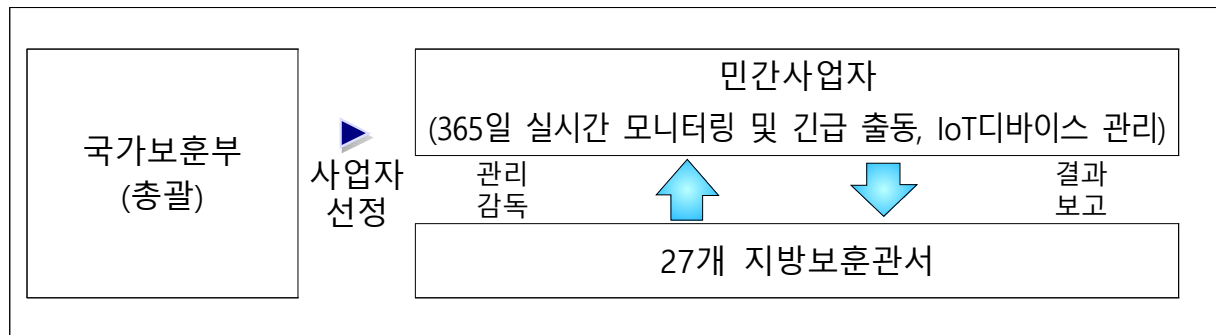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추진
- (사업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제5조, 「국가유공자법」 제2조·제3조, 「고독사예방법」 제4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사업대상) 1인가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 (기타조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복지부·지자체 돌봄서비스 미수혜자
- 주요내용
 - (사각지대 축소)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대상 규모를 확대*, 고독사 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 '25년 시범사업 (980명) → '26년 고독사 위험군 전체(3천여명)
 - (관계기관 협업) 복지부·지자체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국가유공자 우선 지원, 국가유공자 1인가구 대상 집중관리 및 실태조사 등 협력 강화
 - * 지자체별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등
 - (법적기반 구축) 국가유공자 고독사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 법률 개정 추진

□ 추진체계

- (사업 주체 및 시행 방법) 국가보훈부 직접 수행

○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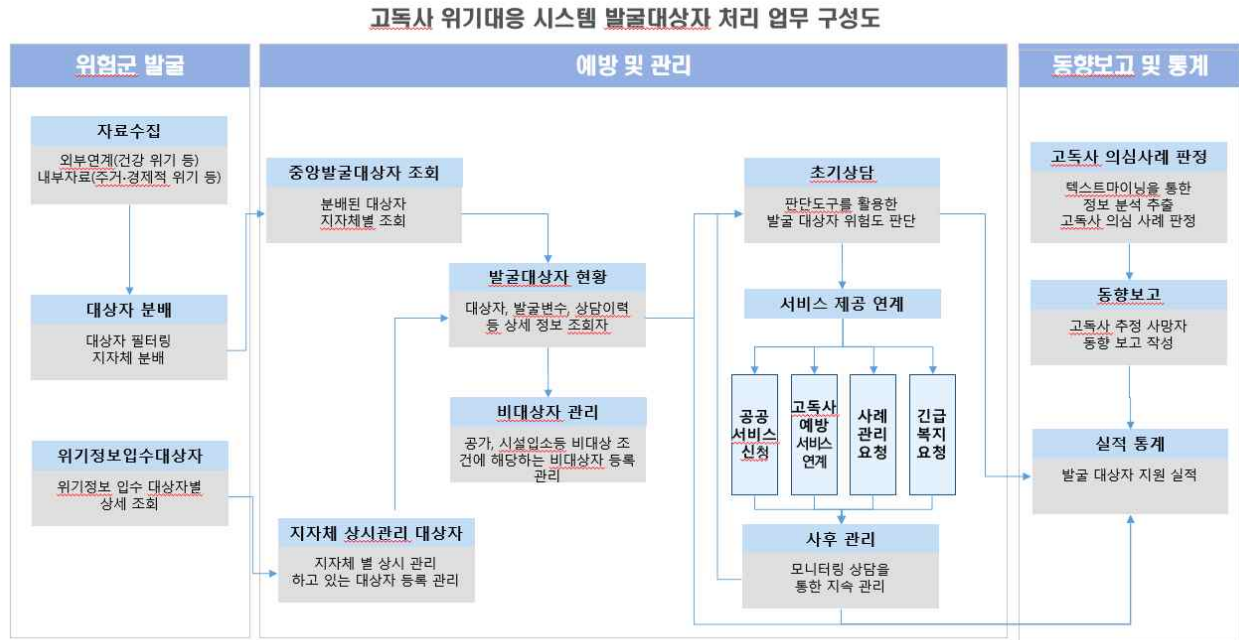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AI기반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044-202-5620

IV.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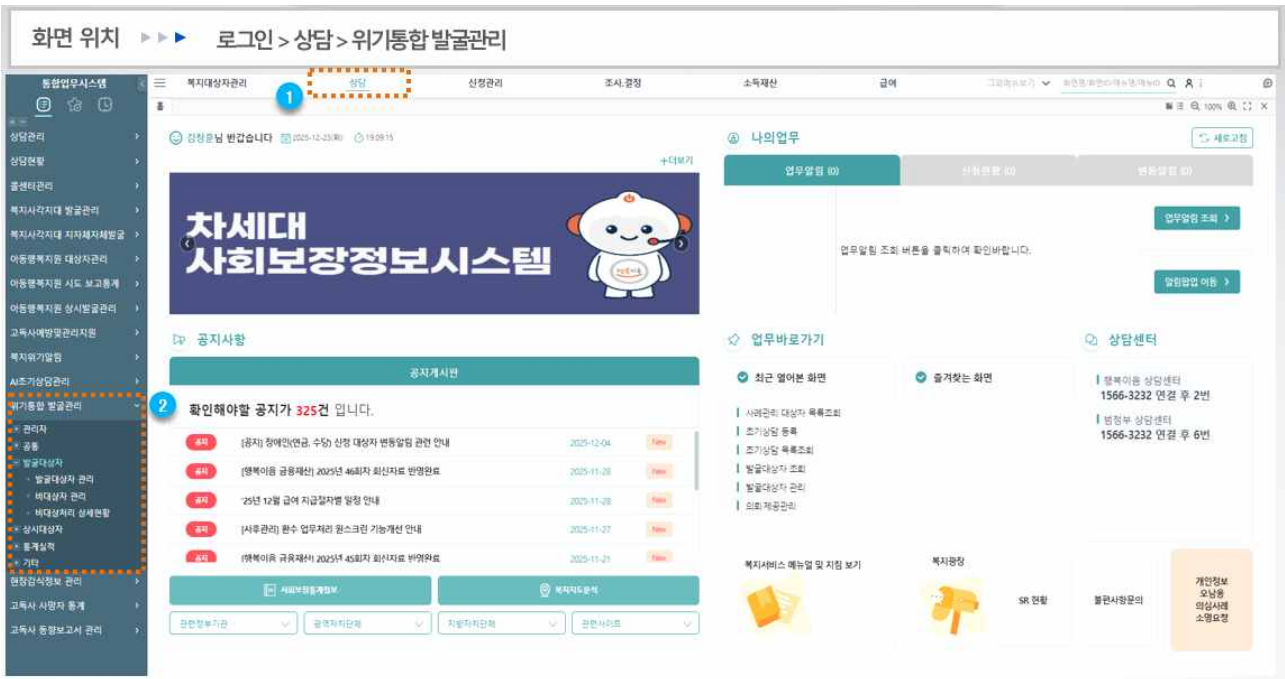
□ 시스템 업무 흐름도



□ 시스템 업무처리 목차

1. 메뉴 접근
2. 발굴 대상자 관리 / 비대상자 관리
3. 초기상담
4.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지원 / 통합사례 관리
5. 상시대상자 관리(지자체 관리 대상자)
6. 기타(통계, 공지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
7. 동향 보고

1. 메뉴 접근: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① 담당자 로그인 이후 상단 메뉴의 상담을 선택한다.
- ② 좌측 메뉴구성에서 위기통합 발굴관리를 선택한다.

2-①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대상자 관리



- ① 검색 조건의 위기통합발굴구분을 [고독사]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고독사 발굴대상자를 조회한다.
- ② 대상자 관리 목록에 발굴 대상자 리스트를 표시된다.
- ③ 대상자 리스트에서 특정 대상자 선택 시 하단에 대상자의 발굴 변수가 표시된다.
- ④ 대상자의 성명을 클릭하면 대상자에 대한 발굴 대상자 현황 팝업을 호출한다.

□ 비대상자 등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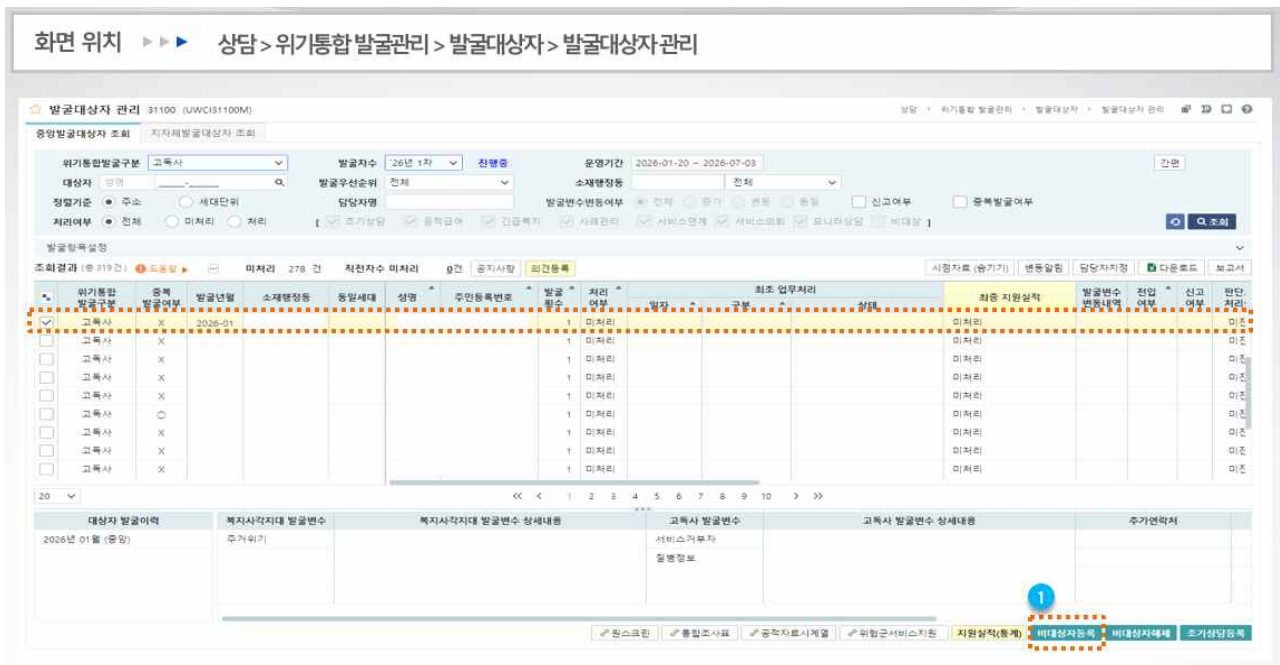
○ 비대상자 등록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비대상자 등록 시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비대상자로 등록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비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비대상 등록 사유가 소재 미확인의 경우, 소재 미확인대상자 조회 목록에 자동 등록
- * 비대상 등록된 대상자는 발굴변수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1년간 발굴대상자로 분배되지 않음.
(단, '소재 미확인'은 비대상자 처리 시에도 발굴 대상으로 계속 통보, 재조사 시 현장 방문 (주변 탐문 등) 조사를 실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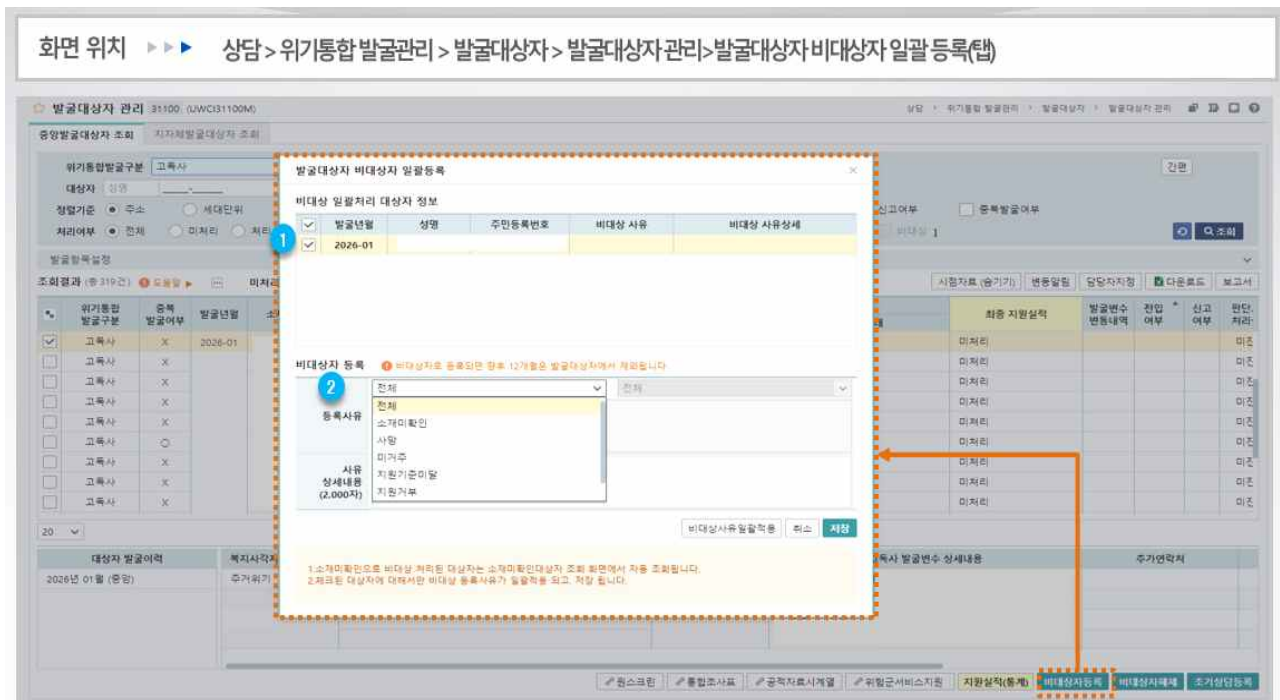
<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

항목	내 용
소재 미확인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빈집,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거주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입력합니다.
의료기관 입원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건강문제로 입원 중인 상태일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군 입대·교정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군 입대를 했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출타 (타 지역, 해외 거주)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외부에 머물고 있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지원거부	발굴대상자를 조회하고 확인한 결과, 동 대상자가 정부나 민간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망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입력합니다.
기상담 완료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이미 초기상담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한 대상자인 경우에 입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공공서비스 신청 진행 중인 대상자 포함
취업	발굴대상자를 조회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가 취업한 상태여서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기타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그 밖의 사유로 발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2-② 발굴대상자 중 비대상자 등록



- ① 발굴대상자관리 화면에서 비대상자로 처리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비대상자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비대상자처리는 업무처리가 미처리인 대상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 ① 등록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 ② 비대상처리 등록 사유를 선택, 상세내용 입력하여 저장한다.

2-② 발굴대상자 중 비대상자 해제

[illegible]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건에 맞는 비대상자를 조회한다.
- ② 비대상자 목록에서 해제 대상자를 선택한다.
- ③ 해제 대상자 목록 팝업 화면에서 해제사유 내용을 입력한다. 다 건일 경우 해제사유 일괄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적용한다.
- ④ 해제사유가 입력된 대상자를 저장버튼 클릭하여 해제 처리한다.

화면 위치

▶▶▶

상단 > 위기통합 발물관리 > 발괄대상자 > 비대상처리 상세현황

비대상처리 상세현황 S3600 (UWCIS3600M)

상단

위기통합 발물관리

발물관리

비대상처리 상세현황

위기통합 발물관리

그룹사

발물관리

2026년 1차

발물관리

2026-01

대상자

모집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조회

조회

조회결과 (총 2건)

다운로드

발물관리	발물관리	소재명	소재명	소재명	소재명	소재명	소재명	소재명
그룹사	2026-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룹사	2026-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비대상처리 상세현황

개인정보

발물관리

2026-01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발물관리

2026-01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소재명

서울특별시

비대상 처리 이력

번호

발물관리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① 비대상처리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성명을 클릭한다.
- ② 비대상처리 이력상세 현황 팝업이 오픈되며, 비대상처리 이력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화면 위치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 발굴대상자 관리 >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고독사Q 사각지대 X]

중앙발굴대상자 관리 31100 (UWC31100M) 발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 발굴대상자 관리 >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발굴자수 26년 1차 진행중 운영기간 2026-01-20 ~ 2026-07-03 간편

대상자 검색 발굴우선순위 전체 소재별장동 전체

정렬기준 ● 주소 ○ 세대단위 담당자명 발굴연수변여부 ☐ 신고여부 ☐ 중복발굴여부

처리여부 ● 전체 ○ 미처리 ○ 처리 { ☒ 추가발달 ☒ 공적급여 ☒ 긴급복지 ☒ 사례관리 ☒ 서비스연계 ☒ 서비스회복 ☒ 호신파악 ☒ 비대상 }

조회

중앙발굴대상자										시정자료 (승가기)		반통알림		담당자치청		다운로드		보고서	
☑	위기통합 발굴구분	중복 발굴여부	발굴년월	소재별장동	통일세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굴 횟수 *	처리 여부 *	일자 *	구분 *	상태	최종 지원실적	발굴연수 변동내역	천합 여부	신고 여부	완전 처리		
☐	고독사	X						1											
☐	고독사	X						1											
☐	고독사	X						1											
☒	고독사	X	2026-01					1											
☐	고독사	O																	
☐	고독사	X						1											
☐	고독사	X						1											
☐	고독사	X						1											
☐	고독사	X						1											

20 << < 1 2 3 4 5 6 7 8 9 10 >>

대상자 발굴이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연수	복지사각지대 발굴연수 상세내용	고독사 발굴연수	고독사 발굴연수 상세내용	추가연락처
2026년 01월 (승가)	추가취약		서비스거부자 결명정보 장애지체		

초기상담등록

- 화면 위치** ▶▶▶ **상단 > 위기통합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 발굴대상자 관리 >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고독사 O, 사각지대 O]**

발굴대상자 관리 31100 (UWC31100M) 중앙 > 위기통합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 발굴대상자 관리 >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중앙발굴대상자 조회 지역별발굴대상자 조회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
 발굴자수: **26년 1차** |
 진행중: **진행중** |
 운영기간: **2026-01-20 ~ 2026-07-03** |
 간판: **간판**

대상자: **성명** _____ |
 발굴우선순위: **전체** |
 소재행정동: **전체**

정렬기준: ☒ 주소 ☐ 세대단위
☐ 처리여부 ☐ 전체 ☐ 미처리 ☐ 처리

☐ 담당자명 |
☒ 추가상담 |
☒ 공적금여 |
☒ 긴급복지 |
☒ 사례관리 |
☒ 서비스연계 |
☒ 서비스이용 |
☒ 모니터링실況 |
☐ 비대상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결과 (총 316건)		도출할	미처리	262 건	직접지수	미처리	승인	공치사항	외관등록	시정자료 (승리기)	변통일합	담당자지정	다운로드	보고서			
위험등급	중복 발굴여부	발굴년월	소재행정동	동일세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굴 횟수	처리 여부	일자	구분	상태	최초 업무처리	최종 지원실적	발굴변수 변동내역	전입 여부	신고 여부	판단 처리
☐	X						1										
☐	X						1										
☐	X						1										
☐	X						1										
☒	X	2026-01					1										
☐	X						1										
☐	X						1										
☐	X						1										
☐	X						1										

20 << < 1 2 3 4 5 6 7 8 9 10 > >>

대상자 발굴이력	복지사각지대 발굴변수	복지사각지대 발굴변수 상세내용	고독사 발굴변수	고독사 발굴변수 상세내용	추가연락처
2026년 01월 (중앙)	공동연계		일반정보	장애지체	

3

☒ 링크스핀 |
☒ 통합조사표 |
☒ 공적자료시계열 |
☒ 위험관리서비스지움 |
☒ 지원실적(불가) |
☒ 비대상사등록 |
☒ 비대상사해제 |
☒ 추가상담등록

- 87 -

3-① 고독·고립 발굴대상자 초기상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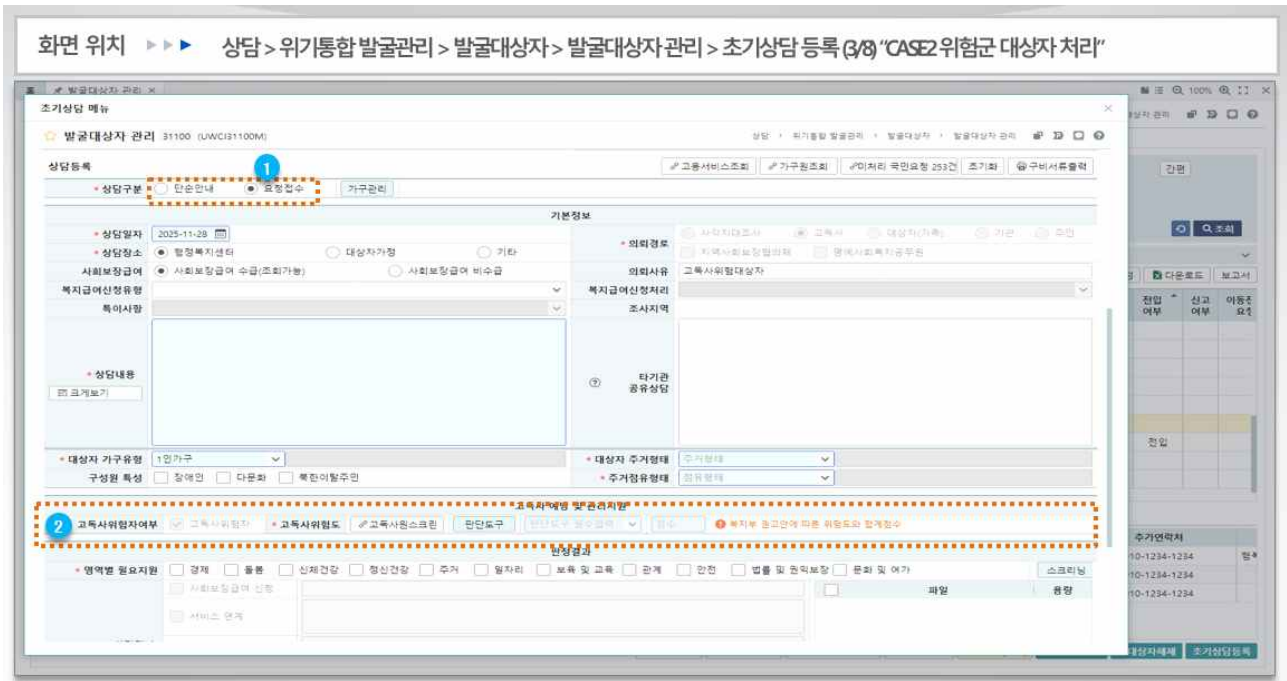
화면 위치 ▶▶▶ 상담>위기통합발굴관리>발굴대상자>발굴대상자관리>초기상담등록(1/8)

- ① 초기상담등록 화면의 대상자정보에 고독사 알림표시가 되어 고독사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 ② 의뢰경로: 고독사 선택(비활성화), 의뢰사유: 고독사 위험대상자(수정가능)로 세팅된다.

화면 위치 ▶▶▶ 상담>위기통합발굴관리>발굴대상자>발굴대상자관리>초기상담등록(2/8) "CASE1 비위험군 대상자 처리"

[비위험군 대상자 처리]

- ① 비위험군 대상자인 경우 상담구분을 '단순안내'로 처리한다.
- ② 상담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한다. 단순안내는 판단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을 종료한다.



[위험군 대상자 처리]

- ① 상담구분은 단순안내 및 요청접수가 있으며, '요청접수'를 선택할 경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항목이 표출된다.
- ②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은 고독사 위험자 여부, 고독사에 대한 원스크린, 판단도구로 구분된다.



- ① 고독사원스크린 버튼을 클릭한다.
- ②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팝업이 호출되며,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발굴이력, 상담이력, 사례관리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판단도구 버튼을 클릭하여 판단도구 팝업 화면을 호출한다.

3-②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정보 등록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선택한다.
- ②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①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입력한다. 이 때 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데이터가 있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보여진다.
- ② 위험군/해당없음 체크란은 자동 체크 된다.
- ③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들이 저장된다.

4-① 고독·고립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정보 등록

화면 위치 ▶ ▶ ▶ 상담>위기통합발굴관리>상시대상자>위험군 서비스 지원

위험군 서비스 지원 62100 (UWC62100M)

지역: [선택] 검색어: [입력] 서비스제공기간: 2026-01-10 ~ 2026-02-09

서비스분류: 관계, 고독고립예방및관리, 전체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서비스의뢰 가능여부	의뢰처리기관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등록기관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명	서비스 대상자건수
내부서비스	-	-	-	-	관계	고독고립예	장기안부확인	프로그램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중앙...	11

대상자목록 (총 11건)

번호	발굴유형	접수경로	상담일자	요청일자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관리담당종	주소	서비스기간	대기	신청	재
1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9	2026-01-29						2026-01-01 ~ 2026-01-29	○	○	
2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3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4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5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6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고독사 위기 대응에 관련 서비스 대분류는 관계, 중분류는 고독·고립 예방관리 및 최종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
- 1번 외에 발굴 연월 등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한다.
-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위기통합발굴관리>상시대상자>위험군 서비스 지원>복지자원 신청 [신규서비스]

위험군 서비스 지원 62100 (UWC62100M)

지역: [선택] 검색어: [입력] 서비스제공기간: 2026-01-10 ~ 2026-02-09

신청유형: 신규서비스, 기존서비스

서비스분류: 관계, 고독고립예방및관리, 전체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서비스의뢰 가능여부	의뢰처리기관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등록기관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명	서비스 대상자건수
내부서비스	-	-	-	-	관계	고독고립예	장기안부확인	프로그램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중앙...	11

대상자목록 (총 11건)

번호	발굴유형	접수경로	상담일자	요청일자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관리담당종	주소	서비스기간	대기	신청	재
1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9	2026-01-29						2026-01-01 ~ 2026-01-29	○	○	
2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3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4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5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6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복지자원 신청

신청유형: 신규서비스, 기존서비스

서비스분류: 관계, 고독고립예방및관리, 전체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서비스의뢰 가능여부	의뢰처리기관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등록기관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명	서비스 대상자건수
내부서비스	-	-	-	-	관계	고독고립예	장기안부확인	프로그램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중앙...	11

대상자목록 (총 11건)

번호	발굴유형	접수경로	상담일자	요청일자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관리담당종	주소	서비스기간	대기	신청	재
1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9	2026-01-29						2026-01-01 ~ 2026-01-29	○	○	
2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3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4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5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6	중앙발굴	자체제공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신청 유형을 신규 서비스로 선택한다.
-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서비스 등록을 위한 서비스 분류를 조회한다. 서비스 분류는 고독사에 해당하는 관계 → '고독·고립 예방관리'를 선택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상시대상자 > 위험군 서비스 지원 > 복지자원 신청 [신규 서비스]

위험군 서비스 지원 (62100) (UWC182100M)

지역: [선택] 검색어: [입력] 서비스제공기간: 2026-01-10 ~ 2026-01-26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내부서비스, 외부서비스

대상자목록 (총 11건)

번호, 발굴유형, 접수경로

1, 2, 3, 4, 5, 6, 7, 8, 9, 10, 11

대상자 추가

대상자 조회

발굴대상자 조회

관리명: [선택] 대상자: [선택]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굴연월: 26년 1차, 상담여부: [선택]

대상자목록 (총 17건)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담여부, 서비스연계, 이력존재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비스신청정보

서비스기간: 2026-01-26 ~ 2026-01-26, 제공횟수: 1회

신청, 서비스완료, 신청(완료)서율력

- ①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선택하기 위해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 ②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발굴연월**, **상담 여부**를 선택하고 **제공 대상자**를 조회한다.
- ③ 대상자를 체크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상시대상자 > 위험군 서비스 지원 > 복지자원 신청 [신규 서비스]

위험군 서비스 지원 (62100) (UWC182100M)

지역: [선택] 검색어: [입력] 서비스제공기간: 2026-01-10 ~ 2026-01-26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내부서비스, 외부서비스

대상자목록 (총 11건)

번호, 발굴유형, 접수경로

1, 2, 3, 4, 5, 6, 7, 8, 9, 10, 11

대상자 추가

대상자 조회

발굴대상자 조회

관리명: [선택] 대상자: [선택]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굴연월: 26년 1차, 상담여부: [선택]

대상자목록 (총 17건)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담여부, 서비스연계, 이력존재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비스신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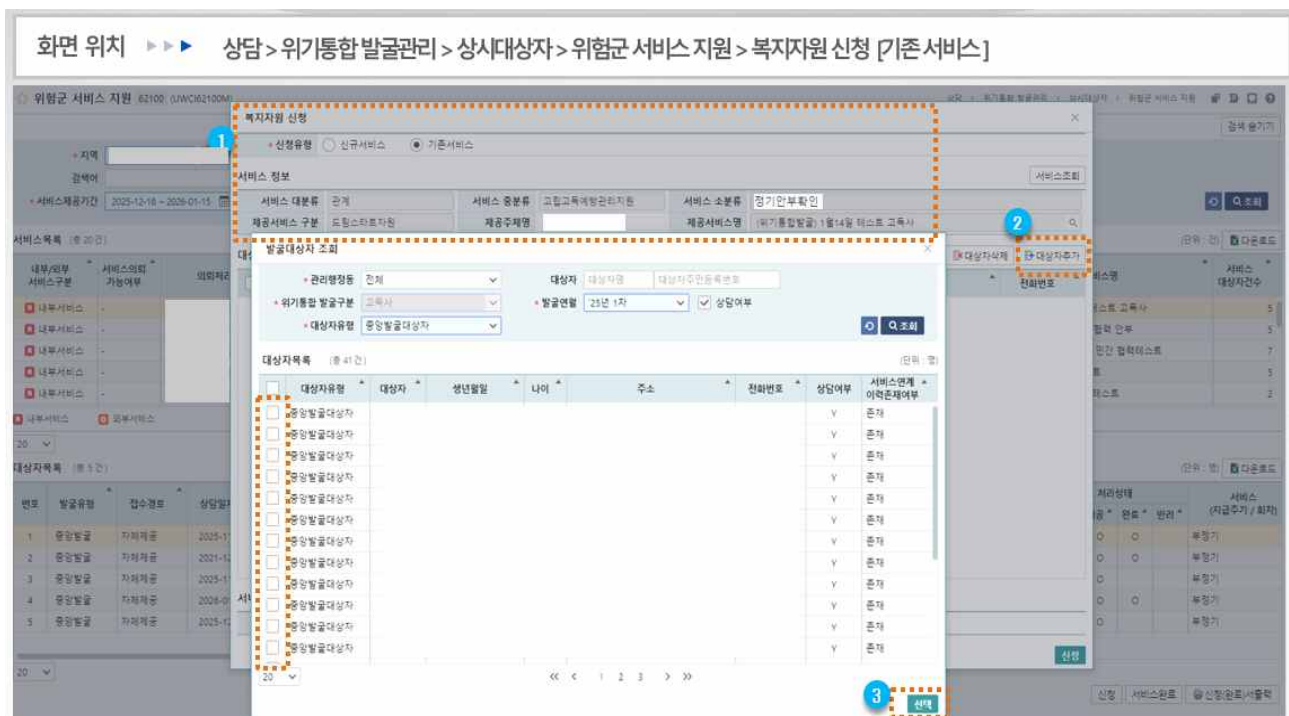
서비스기간: 2026-01-26 ~ 2026-01-26, 제공횟수: 1회

신청, 서비스완료, 신청(완료)서율력

- 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명을 입력한다.
- ② 신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서비스 제공 기간을 시작일자, 종료일자 및 제공회수 등을 입력한다.
- ④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된 대상자 및 서비스 기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한다.



- ① 목록화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서비스를 선택한다.
- ② 신청유형을 '기존서비스'로 선택한다.
- ③ 목록화면에서 선택된 특정 서비스 정보가 표시된다.



- ① 기존 서비스 정보를 표시한다.(서비스 조회를 통해 선택된 서비스)
- ②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조회한다.
- ③ 조회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선택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상시대상자 > 위험군 서비스지원 > 위험군 서비스지원 신청

위험군 서비스지원 82100 (UWC62100M)

지역: [선택] | 검색어: [선택] | 서비스분류: [선택] | 관계: [선택] | 고독고립예방기관: [선택] | 신청: [선택] | 서비스제공기간: 2026-01-10 ~ 2026-02-09 | 진행상태: [선택] | 신청: [선택] | 제공: [선택] | 반려: [선택] | 완료: [선택] |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 발굴연월: 26년 1차

서비스목록 (총 1건)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서비스의뢰 가능여부	의뢰처리기관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종류기관명	서비스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유형	제공서비스명	서비스 대상자건수
내부서비스	-	-	-	-	관계	고독고립예...	정기안부확인	프로그램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중앙...	1

대상자목록 (총 11건)

성당일자	요청일자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	관리행정동	주소	서비스기간	대기	신청	제공	완료	반려	서비스 (지급주기 / 회차)
2026-01-29	2026-01-29						2026-01-01 ~ 2026-01-26	○	○	○	○		부정기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		부정기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		부정기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		부정기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		부정기
2026-01-26	2026-01-26						2026-01-26 ~ 2026-01-26	○	○	○	○		부정기

- ① 서비스 및 지원 대상자를 조회하여 특정 서비스를 선택한다.
- ② 선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 목록이 조회되며, 신청, 제공 등 서비스 처리상태가 표시된다.

4-② 고독·고립 위험자 사례관리 의뢰(통합사례관리)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 발굴대상자관리 > 초기상담 등록 & 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고독사위험자여부: [선택] | 고독사위험자: [선택] | 고독사위험도: [선택] | 고독사원스크린: [선택] | 판단도구: [선택] | 해당인물: [선택] | 0 | 복지부 공고안에 따른 위험도와 함께점수

판정결과

영역별 필요지원: [선택] | 관계: [선택] | 안전: [선택] | 법률 및 권익보장: [선택] | 문화 및 여가: [선택] | 스크리닝: [선택]

조사/스크리닝

조사/스크리닝을 통해 종합 판정이 통합사례관리로 판정이 된다.

초기상담

초기상담을 저장하면 사례관리 의뢰신청버튼이 활성화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사례관리 후보자로 등록한다.

- ① 사례관리 의뢰를 위해 영역별 필요지원에서 관계를 선택한다.
- ② 영역별 필요지원 관계에 따른 스크리닝 화면을 오픈한다.
- ③ 조사/스크리닝을 통해 종합 판정이 통합사례관리로 판정이 된다.
- ④ 초기상담 내용을 저장하면 사례관리 의뢰신청버튼이 활성화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사례관리 후보자로 등록한다.

[illegible]

- ① 검색조건의 고독사를 체크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고독사 대상자를 조회한다.
- ② 대상자 정보 목록에서 고독사 대상자는 범례로 표시된다.
- ③ 대상자 정보 목록의 하단의 범례 유형이 표시된다.
(우선순위 : 고독사+사망자, 고독사+말소자, 고독사위험대상자)
- ④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사례관리 후보자로 등록되어 조회된다.

- ① 왼쪽의 대상자정보 영역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선택하면 대상자 유형에 고독사 위험 대상자가 표시된다.
- ② 고독사 대상자를 조회 후 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 동일하게 진행된다.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지자체의 상시관리대상자를 조회한다.
- ② 조회된 상시관리대상자의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목록확인]버튼을 선택하여 대상자의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다.
- ③ **추가 상시관리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화면을 호출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상시대상자 > 지자체 상시관리 대상자-상시관리 대상자 등록

- ① 상시관리대상자 선택을 위해 복지대상자 검색 화면을 열어 상시관리대상자를 선택한다.
- ② 다수 상시관리대상자 등록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을 업로드한다.
- ③ 엑셀양식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 오류 검증을 수행하여 오류에 대해 등록오류 목록에 표시한다.
- ④ 업로드 된 상시관리대상자를 저장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상시대상자 > 지자체 상시관리 대상자-대상자 서비스 목록 조회

- ① 조회된 대상자의 서비스 [목록확인]을 선택한다.
 - ② 대상자의 서비스목록을 확인한다
 - ③ 대상자의 서비스종료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종결처리]를 선택하여 서비스종료일에 현재일자를 셋팅하고, 등록여부를 해제로 처리한다.
- ※ 서비스의 종결이 가능하고 추가시에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업로드한다.

- ① 상시관리대상자 해제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 후 (일괄 선택, 단 건 선택, 여러 건 선택 가능)
- ② 상시관리대상자 해제 버튼을 클릭한다.
- ③ 해제사유내용을 입력한다, 다 건일 경우 해제사유일괄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적용한다.
- ④ 해제사유가 입력 된 대상자를 저장 버튼 클릭하여 해제 처리한다.

6-① 소재미확인 대상자

- ① 소재미확인대상자 목록에서 해제 대상자를 선택 후 (일괄 선택, 단 건 선택, 여러 건 선택 가능)
- ② 비대상자 해제 버튼을 클릭한다.
- ③ 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하여 대상자가 해제된다.

6-② 통계실적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통계실적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53100 (UWC53100M)

중장기지원실적 | 지자체지원실적 | 합동평가용 지원실적(연도별) | 합동평가용 지원실적(자수별)

소재행정동: 고독사 | 발굴차수: 26년 1차 | 발굴연월: 2026-01 | 정기 | 지원실적기간: 2025-12-12 ~ 2026-05-27 | 실적기준일자: 2025-12-17

조회구분: ● 합동구분 ● 발굴년월

발굴대상자 통계 (총 6건) ● 지원실적은 해당 차수의 지자체합동평가 실적발굴기간 동안 처리된 내용이 실적으로 처리됩니다

소재행정동	발굴연월	발굴차수	합계 (①+②)	③미처리	소계 (7)+(8)	(7)조치결과 (②+⑤+⑥+⑧+⑨)	⑨단순상담
합계			7	4(57.14)	3(42.86)	3(100.00)	1(33.33)
2026-01	26년 정기 1차	2	1(50.00)	1(50.00)	1(100.00)	1(100.00)	1(100.00)
2026-01	26년 정기 1차	1	0(0.00)	1(100.00)	1(100.00)	0(0.00)	0(0.00)
2026-01	26년 정기 1차	1	1(100.00)	0(0.00)	0(0.00)	0(0.00)	0(0.00)
2026-01	26년 정기 1차	1	1(100.00)	0(0.00)	0(0.00)	0(0.00)	0(0.00)
2026-01	26년 정기 1차	1	1(100.00)	0(0.00)	0(0.00)	0(0.00)	0(0.00)
2026-01	26년 정기 1차	1	0(0.00)	1(100.00)	1(100.00)	0(0.00)	0(0.00)

1.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는 공적급여, 긴급복지, 사액관리, 서비스연계요청에 대한 피도해 정보로 현재 발굴대상자 처리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합계 = 미처리 + 처리
 3. 소계 = 조치결과 + 비대상
 4. 조치결과 = 단순상담, 요청접수 대상자, 조치중 대상자, 조치완료 대상자
 5. 미지름 = 신청 대상자 중 보살핌을 받지 않음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지원실적정보(중양 지원, 지자체 지원)를 조회한다.
- ② 조회된 소재 행정동별 지원실적에서 해당 실적을 클릭하여 지원실적 상세조회화면을 호출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통계실적 > 발굴대상자 처리 현황

발굴대상자 처리현황 53C00 (UWC53C00M)

위험통합발굴구분: 고독사 | 시도: 서울특별시 | 시군구: 강남구 | 연도: 2025-11-01 ~ 2025-04-15 | 실적기간: 2025-11-01 ~ 2025-04-15

서울특별시 - 실적현황 (실적기준일자: 2025-12-12)

발굴대상자(명)	처리완료(건)	처리율(%)	미처리(건)	미처리율(%)	지원대상자(명)	지원율(%)
29	0	0.00	29	100.00	0	0.00

발굴대상자 실적현황

발굴현황 상위 5

발굴대상자 취보장(자책) 현황

비대상 현황

- ① 위기통합발굴 구분을 고독사로 조회한다.
 ※ 해당 발굴차수의 발굴 대상자 처리·실적 현황을 조회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통계실적 > 위험군 서비스 연계 현황

위험군 서비스 연계현황 54200 (UWCIS4200M)

위험통합 발굴구분: 고독사, 26년 1차, 읍면동: 진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	기초수급	간접복지	사례관리	안전서비스	기타
진제		소계	463	0	0	0	463	0
			463	0	0	0	463	0
			14	0	0	0	14	0
			89	0	0	0	89	0
			50	0	0	0	50	0
			10	0	0	0	10	0
			29	0	0	0	29	0
			14	0	0	0	14	0
			34	0	0	0	34	0
			9	0	0	0	9	0
			11	0	0	0	11	0
			5	0	0	0	5	0
			1	0	0	0	1	0
			50	0	0	0	50	0
			17	0	0	0	17	0
			10	0	0	0	10	0
	36	0	0	0	36	0		
	8	0	0	0	8	0		
	76	0	0	0	76	0		

- ① 위기통합발굴 구분을 고독사로 조회한다.

6-③ 모니터링 상담 등록

화면 위치 ▶ ▶ ▶ 상담 > 상담관리 > 모니터 상담 등록

모니터상담 등록 11700 (UWSM11700M)

관리행동: 대상자, 3개월 내 미 실시 (1년전기준), 2025-12-2025-12, 실적구분: 진제, 관리구분: 진제, 상담주거: 진제, 상담방법: 진제

대상자 목록 (3개월 내 미 실시 대상자):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주거	상담일	상담종류	상담결과
김영희	65	여	010-1234-5678	단독	2025-09-01	상담	상담완료

3개월 경과자, 9개월 경과자, 1년 경과자, 2년 경과자, 3년 경과자, 4년 경과자, 5년 경과자, 6년 경과자, 7년 경과자, 8년 경과자, 9년 경과자, 10년 경과자, 11년 경과자, 12년 경과자

상담 계획: 2024-2028, 조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												
2025									2025-09-01	2025-10-01	2025-11-01	2025-12-01
2026									2025-09-10	2025-10-10	2025-11-10	2025-12-10
2027												2025-12-31
2028												

- ①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대상자 중 3개월 내 미 실시 대상자(모니터상담 등록일자 기준 1년 이내)를 조회한다. 3개월 내 미 실시 체크박스 체크시, 검색조건의 관리행동등을 제외한 조건은 비활성화 된다.
- ② 조회 시 관리행동등 단위로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대상자 중 3개월, 9개월 내 미 실시 대상자 건수 안내, 건수 클릭 시 해당 대상자를 조회한다.
- ③ 대상자 목록 하단의 3개월 경과자, 9개월 경과자의 범례표시는 모니터링 상담의 모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상담 등록일자에서 3개월, 9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 표시된다.

화면 위치 >>> 상담 > 상담관리 > 모니터 상담 등록

모니터 상담 등록 11700 (UWSM11700M)

관리항목: 대상자, 상담, 회군 1주일 후보자, 재외자, 내가담당원대상자, 3개월내 미실시 (1년전기준)

대상자구분: 전체, 기조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대상자, 기타

상담계획: 2025-12, 계획수립, 계획미수립, 담당자, 상담문서, 상담방법

대상자 목록 (총 1건) 3개월내 미실시 0건 / 9개월내 미실시 0건

대상자 상태: 대상자구분, 대상자성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상담주거, 상담방법, 실적등록횟수, 주소, 대상자 전화번호, 대상자 휴대전화, 대상자학력, 대상자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결혼여부

실적등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담계획연도: 2024 - 2028

실적등록 및 목록조회, 대상자 관리, 대상자 계획, 상담자 변경, 계획작성, 상담지 분석, 실적분석, 분석서

- ④ 검색 조건의 고독사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고독사 대상자를 조회한다.
- ⑤ 검색된 목록의 대상자 성명 옆에 고독사 대상자의 경우 ⑥하단의 범례가 표시된다.
- ⑦ 고독사 대상자 선택 시 해당 연월에 상담계획을 입력한다. 상담계획은 고독사 위험군 특성에 따라 2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

6-④ 공지사항

화면 위치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공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53800 (UWC153800M)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제목, 조회

목록 (총 6건)

번호	제목	제시일	조회
1	공지20251212	2025-12-12	18
2	고독사 공지사항 테스트 - 주승호	2025-12-03	13
3	고독사 공지사항 테스트 - 제목	2025-12-02	24
4	고독사-테스트	2025-12-02	5
5	간위테스트 중첩용 입력 - 수정 테스트	2025-11-06	50
6	고독사 공지사항 - 3 중앙발굴대상자 화면에서 등록	2025-11-05	21

공지내용

제목: 공지20251212

내용: 공지20251212

첨부파일: 0 Files, 0.00 byte Added

다운로드

- ① 검색 조건의 위험군 발굴구분 [고독사]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공지사항을 조회한다.
- ② 목록의 제목을 클릭한다.
- ③ 공지 내용을 확인한다.

6-⑤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 등록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공통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목록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83000 (UWC183000M))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등록일자: 2025-11-22 ~ 2025-12-22 의견구분: 전체 의견상세구분: 전체 반영여부: 전체 반영결과: 전체

조회결과 (총 2건)

No	업무구분코드	등록일자	작성자
1	고독사	2025-12-13	
2	고독사	2025-12-11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등록

* 의견구분: 위기변수 * 의견상세구분: 추가

개인정보 입력하지 마세요!

* 의견내용

첨부파일

이동할 항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0 Files, 0.00 byte Added

등록 취소

의견등록팝업

의견등록

- ① 조회 된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목록을 확인한다.
- ②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③ 정보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발굴관리 > 공통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록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83000 (UWC183000M))

위기통합발굴구분: 고독사 등록일자: 2025-12-13 의견구분: 전체 의견상세구분: 고독사 반영여부: 전체 반영결과: 전체

조회결과 (총 2건)

No	업무구분코드	등록일자	작성자
1	고독사	2025-12-13	한국
2	고독사	2025-12-11	한국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상세

등록일자: 2025-12-13 작성자: 진행현황: 등록

소재항정동: 의견구분: 의견상세구분: 고독사

의견내용

첨부파일

이동할 항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0 Files, 0.00 byte Added

문제점

개선사항

개선사항 위치: 선택 선택 선택

진행현황: 등록 반영여부: 미수용

처리예정일: 반영결과: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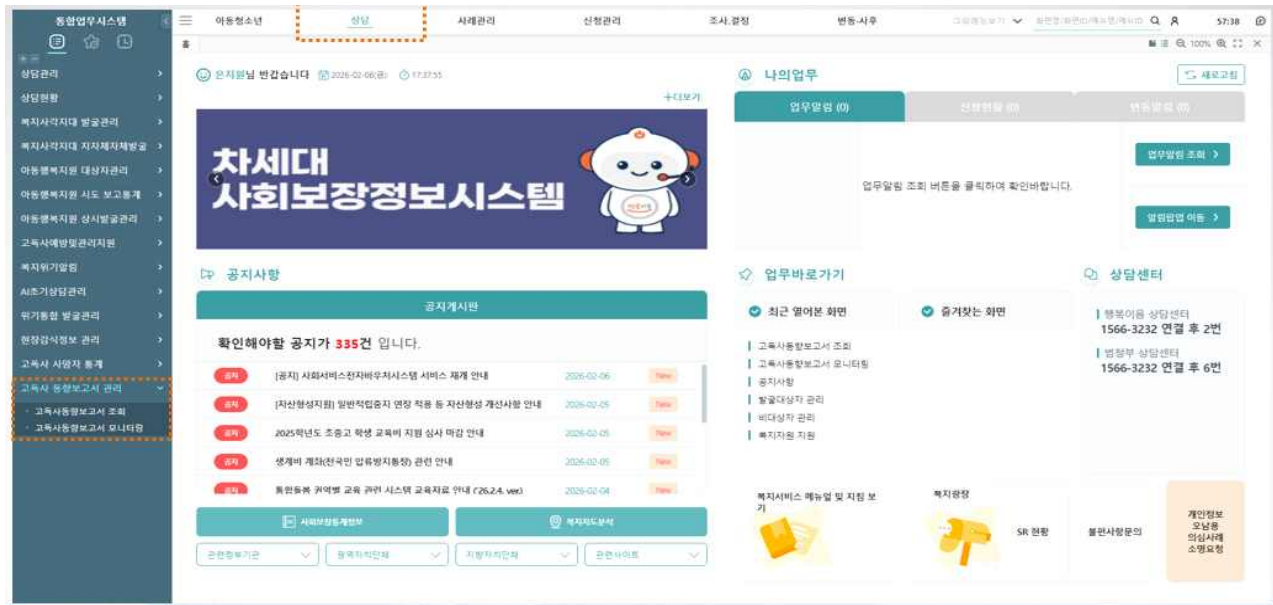
수정 삭제 닫기

처리내용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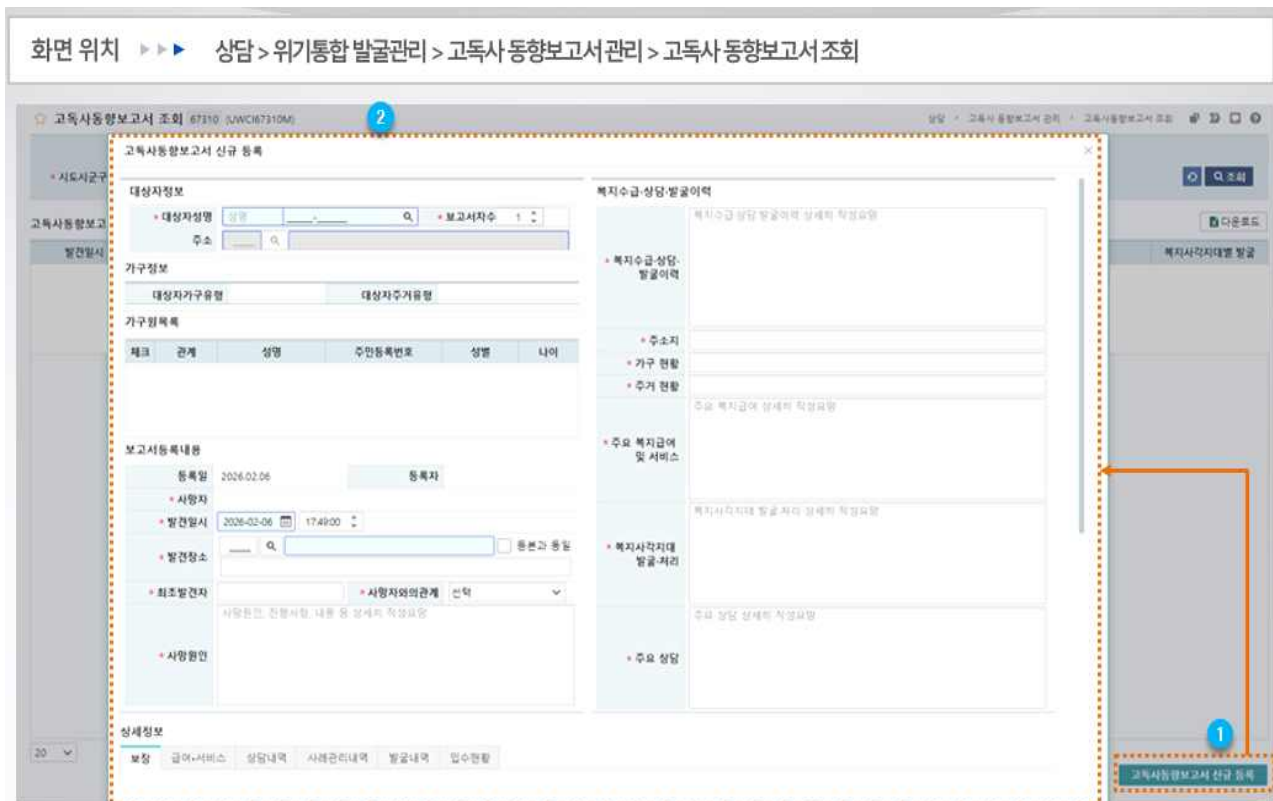
의견등록

- ① 관리자가 처리한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 ② 처리내용을 확인한다.
- ※ 문제점, 개선내용은 운영자 권한(한국사회보장정보원)만 가능

7. 고독사 동향 보고



- ① 좌측 메뉴구성에서 고독사 동향보고서 관리를 선택한다.



- ① 고독사 동향보고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동향보고서 등록 팝업창을 호출한다.
- ② 동향보고서 등록 팝업창이 열리면 보고서를 작성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 ① 대상자 성명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복지대상자 검색 팝업을 호출한다.
- ② 대상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③ 조회된 대상자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한다
- ④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창이 닫히고 대상자 항목에 선택한 대상자(①) 정보에 입력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 ① 대상자 정보가 입력되면 가구원 목록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조회된 목록에서 사망자 확인 후 체크 박스를 클릭한다. 이때 사망자 정보에 선택한 정보가 입력된다
- ② 보고서 등록 내용 및 복지수급 상담 발굴 이력 항목을 입력한다
- ③ 복지수급·상담·발굴이력 항목이 사망자 정보를 기준으로 행복이음에서 조회되어 자동입력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고독사동향보고서 신규 등록

최초발견자 | 사망자와의관계 | 선택 | 주요 상담

1 상세정보

보장 (총 0건) | 급여·서비스 | 상담내역 | 사례관리내역 | 발굴내역 | 입수현황

번호	보장구분	소득인정액	가구원 전체 급여·서비스 (총 0건)
1	자상위장예안		1 자상위계응양국할만
2	일반장예안		2
3	기초노령		3 기초생계의료 양국비
4	장애편복지		4
5	자자제지원		5 기초생계급여
6	정부양국할만		6
7	정부양국할만		7 기초주거급여
8	기초연금		8
9	기초연금		9
10	에너지바우처		10

2 저장

- ① 대상자 급여, 서비스 등 탭을 이동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고독사동향보고서 조회 (67310) (UWC67310M)

대상자 | 지역 | 사망원인 | 발견장소 | 사망 인원 | 연령대 | 성별 | 가구구성 | 특지사항지대별 발굴

1

2

- ① 조회 기간,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 내역을 조회한다.
- ② 조회된 결과에서 상세 조회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여 상세 화면을 호출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 ① 조회된 결과에서 상세 조회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여 상세화면을 호출한다.

화면 위치 ▶ ▶ ▶ 상담 > 위기통합 발굴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관리 > 고독사 동향보고서 조회

- ① 상세 팝업창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상세정보로 보장/급여서비스/상담내역/사례관리내역/발굴내역/입수현황 탭이 제공된다.
- ②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저장된다.
- ③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을 선택하면 삭제 처리 된다.
- ④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고독사동향보고서를 출력한다.

동향보고서

보고서번호	2026		
등록일		등록자	
사망자	(본인)		
발견일시	2026-		
발견장소			
최초발견자	소방관	사망자와의 관계	기타
추정 사망원인			

☐ 대상자 및 가구현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가구 유형	기타가구	대상주거 유형	오피스텔
세대주와의 관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가구원 나이	사망여부
불인			

☐ 복지수급 상담 발굴 이력

1 / 3

서비스상태

동향보고서출력

- ① 동향보고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화면이 팝업창으로 열린다.
- ② 동향보고서 보고서 화면이 조회된다.

V. 사업 관리 및 행정 사항

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 예산 편성·집행

- 개별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민간기관 위탁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가능

□ 기본 원칙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법령

- 지자체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 사업 수행기관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계좌를 개설**하고 기관 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예산을 타 사업(중앙부처, 지자체) 예산 등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세부 집행 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예산 세부 집행계획(예시) >

(단위: 천원)

사업유형	사업명	추진내용 (산출단가, 서비스 제공량 등)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마음회복	마음빛 상담소	○ 심리상담: 7,000천원 - 70천원×10명×10회	7,000	3,500	3,500
	...	...	...		...

- 사업 간 예산 배분은 지자체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기타사업 예산은 총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의 30% 이내로 함
 -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서비스 유형 외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신규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개발 시 30%까지 사용 가능
 - 단, 교육 및 홍보 행사 등은 총 사업 예산의 10% 이내로 함
- (인건비) 총 사업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민간기관 위탁)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기 수행 중이거나 전문성과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예산집행 점검, 결산 및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총괄
 -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서비스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청년센터, 가족센터 등
- 현금성 지원 불가
 - 단,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 등은 사용 가능
 - * (제한 업종) 주류, 담배, 복권,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PC방 등
- 동 사업 국비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비로, 중요재산 취득과 같은 자본형성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신규 개발 서비스 단가는 기존 제도 수준에 준하여 책정

□ 예산 변경 절차 (사업유형별 예산 변경 규모 기준)

- 시군구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예산 변경사항을 보고
 - 총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변동 비율(30%, 30~50%, 50%)에 따라 보고

- ▶ (30% 이내) 시군구 자체승인 → 시도, 보건복지부 보고
- ▶ (30% 초과 50% 이내) 시군구, 시도 보고 → 시도 검토·승인 후 보건복지부 보고
- ▶ (50% 초과) 시군구,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고 → 보건복지부 검토·승인

- 시군구는 예산 변경 보고 시 변동 내역을 시도와 보건복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예시) 표와 함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붙임으로 제출

<예산 변경 보고 양식(예시)>

(단위: 천원)

시군구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사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계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	
춘천시	마음빛 상담소	7,000	3,500	3,500	5,000	2,500	2,000	△2,000	인원 수 변경
	...	...		...	...	...		...	

2 사업 평가

□ 평가개요

○ 목적

-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사업의 운영이 고독·고립 위험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 측정 실시

○ 성과지표

- (지표명) 고독·고립 위험자 지원율
- (정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고독·고립 위험자(신규인원) 중 당해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또는 타 사업 연계 지원자(실인원) 비율

- (의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고독·고립 위험자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한 실적을 의미
- 각 지자체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에 해당지표 값을 작성하여 복지부로 제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방법) '26년 한 해 동안 발굴한 고독·고립 위험자(연간 누적 실인원) 중 '26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또는 타 사업(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연계 지원자(실인원) 비율
- (유의사항) 향후 증빙 가능한 수치로 작성 요망

- 고독·고립 위험자 수(A): '26년에 발굴한 위험자 전체 대상자 수

※ (주의사항) 행복이음 시스템상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기재하거나, '25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가 '26년에 '신규 발굴'(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발굴, 지자체 기획조사, 인적안전망 활용 등)한 고독·고립 위험자 수를 작성

-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대상자 수(B): 고독·고립 위험자(A) 중 '26년에 고독사 예방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한 대상자 수
- 타 사업(지자체 자체사업 등) 연계 대상자 수(C): 고독·고립 위험자(A) 중 '26년에 타 사업 연계를 통해 간접 지원한 대상자 수

< 작성 예시 >

(단위: 명, %)

시군구	고독·고립 위험자 수 (A)	지원대상자 수			고독·고립 위험자 지원율(%) (D/A*100)
		계 (D=B+C)	고독·고립 예방사업 지원 대상자 수 (B)	타 사업 연계 대상자 수 (C)	
시도 계	-	-	-	-	-
00시	3,500	2,800	1,800	1,000	80
00군	...	...	...	...	...

□ 사업 운영

- (사업계획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시도는 소관 시군구 자료를 취합·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 제출기한: 2월 말
- (중간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6월 말 기준 사업 추진사항을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 (변경보고) 시군구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는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결정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 (최종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 정산 보고 및 불용액·이자액 반납

- ◆ (정산보고) 시군구는 1월31일까지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2월 말까지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 (불용·이자액 반납) 시군구는 정산보고 완료된 결과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액을 시도에 반납하고 시도는 반납된 불용액, 이자액을 취합하여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반납

□ 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사업 추진 노력
 -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고독·고립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분배(연 4회, 1월, 4월, 7월 11월)되는 발굴대상자는 고독·고립 여부를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로 확인하고, 발굴된 위험자는 고독·고립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설계 및 지원
- (명단 관리) 고독·고립 위험자는 발굴 방법(시스템, 기획조사 등)과 관계없이 위험자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전체 명단 관리 필요
- (성과지표 등) 고독·고립 위험자 지원율과 사업 전·후 변화되는 대상자의 건강, 삶의 질,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시) 사업 참여자 수, 방문 건수, 홍보 횟수, 대상자 만족도 등

- (자료협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업 실적, 모니터링, 평가 등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충실히 협조
- (중복제공) 고독·고립 고위험자에 대한 유사·중복 서비스* 추가 제공은 지양하고, 기존 서비스를 연계

* 국가(전국) 단위로 제공되며, 대상자 상태가 정기적으로 확인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 (고독사 동향 보고)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시 시군구는 신속히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고독사 동향*을 보고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동향보고서 등록을 권장

○ 수행기관과 준수사항 협약

- 필요시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사업 관리 감독 등을 위해 사업 수행 기관과 협약 등 체결 가능

□ 포상 등

- (장관표창)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유공 대상으로 추천,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연 1회)
-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업 집행실적, 모니터링 협조,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평가지표에 반영
- (성과공유회) 사업 우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연 1회)

□ 교육 및 홍보

- (사업 담당자 교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고립 예방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교육과정 안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정책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추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적 고립 교육과정 >

구분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비고
사회적 고립	사회적고립대응역량 강화 기본과정 (비대면 교육)	· (교육대상) 전국 지자체 사회적고립 대응(고독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 (주요내용) 사회적 고립 예방 법·제도 이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가이드,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지원전략 등	예정
	사회적고립대응역량 강화 심화과정	· (교육대상) 사회적고립대응역량강화기본과정' 이수자('24~'26년) ·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방향,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기획의 실제, AI를 활용한 사업 콘텐츠 기획 방법, 사례연구등	예정
	사회적고립대응 강사양성과정	· (교육대상) 사회적고립(고독사)예방사업 및 사례 공유를 원하는 자(관련 경력 1년 이상) · (주요내용) 강의 사례중심 강의 설계 요령, 강의콘텐츠 작성, 강의스킬 향상 시연 및 피드백	예정

* 교육 연계과정: 기본과정→심화과정 순으로 이수/ ** '26년 교육 계획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VI. 부록

1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

□ 2025년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

시군구명	성명	주요 활동 사례
경상북도 (구미시)	(최우수상) 김OO	■ 사람과 왕래 없이 고립·은둔 생활을 해 온 50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지원 사업과 연계해 식사를 지원하고, 대상자에게 반찬 제공, 쪽지 전달,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부 확인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상자의 고립을 완화함
광주 (광산구)	(우수상) 이OO	■ 관계 단절 상태인 고령의 대상자에게 방문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거부 반응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면서 점차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하였으며 지속적인 가정방문, 건강 등 안부 확인으로 대상자의 고립감 해소에 기여함
인천 (계양구)	(우수상) 구OO	■ 돌봄 플러그 이상으로 확인차 방문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관리가 어려운 고령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사례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청소, 진료 등 지원을 받고 건강이 호전되는 등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함
대구 (서구)	(우수상) 권OO	■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쪽방촌 내에 복지관에서 조성한 공유 공간(사랑방)에서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안부 확인과 상담을 진행해 고립 예방을 위해 노력함
서울 (은평구)	(장려상) 엄OO	■ 안부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단절되어 외롭게 생활하는 대상자와 고독사를 걱정하는 청년 등의 일상을 살피고, 경제적 이유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대상자의 상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기여함
경기도 (남양주시)	(장려상) 신OO	■ 지역 제과점과 협력해 기부받은 빵을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던 중 새벽에 한 대상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고 현장 확인과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계해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함
대구 (북구)	(장려상) 이OO	■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거주하며 유급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며, 학교를 방문해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등교 준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고립 위기 대상자를 회복에 이르게 함
대구 (서구)	(장려상) 이OO	■ 가정방문 중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령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해 복지관에 보고 후, 업무 담당자와 함께 외부 도배지원 사업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지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 과정에 노력함
대구 (달서구)	(장려상) 신OO	■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전화, 고독사 위험 실태조사, 물품 전달 등의 활동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 건강이 염려되는 대상자의 상황을 동에 전달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 목차

I. 이웃연결단 개요

1. ‘이웃연결단’이란?
2. 누가 참여하나요?
3. 어떤 활동을 하나요?

II.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2.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 및 관리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III.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1.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2. 안부 확인 서비스(방문·전화) 지원
3.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지원
4. 지자체 특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지원

IV. 활동 시 주의사항

1. 개인정보관리
2. 안전관리
3. 고독사 위험자의 사망 사고 발견 시 대처방법

V. 필요 서식

1. 이웃연결단 참여 신청서
2. 이웃연결단 참여 협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웃연결단용, 대상자용)
4. 보안서약서
5. 관찰 기록지
6. 가정방문기록지

이웃연결단 개요



1. ‘이웃연결단’이란?

-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송파 세모녀 사건’(142)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회적 고립·고독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고독사 발생 현황 '17년 2,412명 → '23년 3,661명, 51.8% 증가
- » 이에, 지자체에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적자원망(주민활동모임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을 통한 관계 맺기로 더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주민활동조직입니다.

2. 누가 참여하나요?

- »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별 활동 내용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 기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② 등으로 활동 중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고, 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읍면동별로 설치한 민관협력 기구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 내 위기에 처한 가구 발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 활동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일반 지역주민 등)

- » 그 밖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약국, 편의점, 부동산 중개인, 배달서비스업체, 공동 주택관리자(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주민과 접촉이 많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활동을 하나요?

- »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이웃이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 ▶ 주민 누구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징후 발견 시, 제보 가능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가정방문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 지자체별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참고 이웃연결단 지원 사항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회의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다름)
- ▶ 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①에 대해 「자원봉사 종합보험」^② 또는 별도의 상해 보험 가입^③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해, 골절, 통원·입원·수술, 봉사 배상책임 등 보장
 - ② 단,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필수 가입하고,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실적 등록 시, 적용 가능
 - ③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그 외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한 경우 등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서비스 사업비로 지원 가능

II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 » 보건복지부는 '22년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고독사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 제4조(국가 및 지자체 책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고독사 위험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고독사위험자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

2.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 및 관리

- »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보건복지부 권고안) 활용

Point 이웃연결단 역할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요.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가정방문 시 동행해요.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고독사 위험 가구로 확인되면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생애주기별 서비스 주요 내용
청 년	① (마음회복) - 정신건강 문제, 자살위험 등 심리·정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상담·심리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 위험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신속 연계 ② (일상회복) -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기본생활(주거, 식생활, 외출) 지원 - 경제적 자립(취업 준비, 재정관리 교육) 지원 - 사회복귀(정기적 멘토링, 비대면·단기·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 장 년	① (관계개선) - 퇴직·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 재구축을 위해 자조모임, 소셜다이닝·문화체험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 - 참여 부담을 낮춘 소규모 방식으로 관계회복 지원 ② (건강관리) -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중독관리,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를 제공 ③ (경제자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솔루션(채무상담, 금융상담, 법률서비스, 일자리 체험·정보)을 제공 - 타 복지서비스(주거, 일자리 등) 연계를 통해 경제자립을 지원
노 인	① (돌봄연계) - 돌봄서비스(병원 동행, 집 청소지원,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를 제공 -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 ② (사회참여) - 사회적 역할·소속감 상실로 고립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급 봉사활동 등) 기회 제공·연계 ③ (안전확인) -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또는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기기·장비 보급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등

» 이 밖에도 지자체별 특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제공합니다.

Point 이웃연결단 역할

- ▶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가정방문 또는 전화) 해요.
- ▶ 필요 시,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에 따라, 참여할 수 있어요.
(대상자의 외출·산책 지원, 생활쿠폰 전달 등)

III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1.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가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하기

- » 일상생활에서 주변 이웃에게 위험 징후가 없는지 관찰합니다.
- » 주민과 접촉이 많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업무 중에 알게 된 주민의 일상에서 위험 징후를 찾아봅니다.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징후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합니다.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 ① 집 앞에 우편물, 독촉장, 압류 등 우편물이 쌓여 방치되고 있다.
- ②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 ③ 인기척은 없는데 계속해서 텔레비전이나 불이 켜져 있다.
- ④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만 지낸다. 외출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⑤ 자주 마주치던 곳에서 보이지 않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 ⑥ 집 주변에 악취가 나고 벌레 등이 보인다.

※ 위험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음

나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의심 가구 알리기

● 사전 준비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 시, 알림 방법을 미리 숙지합니다.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징후를 확인합니다.

● 위험 징후가 있는 가구 알리기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의 위험 징후(체크리스트) 및 기타 특이사항 정보를 가급적 꼼꼼히 알립니다.

- 행정복지센터 내방, 전화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신고 및 제보합니다.

▶ 지자체(시군구/읍면동)가 지정한 신고 전화 활용

●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기

- <모바일> 복지위기 알림 앱(app)을 통해 신고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설치 및 신고 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 참조

- 대국민 복지정보 포털 복지로(<https://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네이버(www.naver.com) 검색을 통한 복지로 연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

● 복지위기 알림 앱이란

-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나 이웃의 복지위기를 쉽게 빠르게 알리는 앱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

① 내 휴대폰에(복지위기 알림 앱(app)) 설치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거나 QR코드 스캔



② 회원 가입(비회원도 본인 인증을 거쳐 알림 가능)

회원 유형 일반 국민·업무유관자 구분	복지위기 알림 본인, 이웃 위기 알림 구성

- ③ 알림 하기 : 메인화면에서(나에게/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선택 ⇨ 위기상황 선택 ⇨ 가구유형 선택 ⇨ 대상자 정보 입력(본인 알림의 경우 본인 정보 입력) ⇨ 알림하신 분의 정보 입력(이웃 알림)

이웃 알림 1 알림내용 2 3 4 * 표시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위기상황 선택 * ☐ 생계 지원 식비, 주거비, 공과금 지원 등 ☐ 돌봄 보호 간병, 시설보호, 주야간 보호 등 ☐ 건강 의료 질병, 진단 치료, 입산 출산 등 ☐ 일상생활 가사·식사·이동·위생 지원 등 ☐ 안전 위기 폭력, 학대, 자해 등 ☐ 주거 지원 거주마련, 주거환경 개선 등 ☐ 일자리 구직, 자활, 직업능력개발 등 ☐ 아동 지원 돌봄, 양육상담, 보육·교육 등 ☐ 채무·법률 채무·법률 상담 등 ☐ 고립·고독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 기타 기타 입력	이웃 알림 1 2 3 내 정보 4 내 정보 확인 및 동의 ☒ 익명알림 이름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용 목적</th> <th>수집항목</th> <th>보유·이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알림 하는 자의 식별, 위기(사)할 알림 확인 및 연락, 처리결과 통지</td> <td>개인별 고유인증 식별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알림내용</td> <td>5년</td> </tr> </tbody> </table>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필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 기간	알림 하는 자의 식별, 위기(사)할 알림 확인 및 연락, 처리결과 통지	개인별 고유인증 식별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알림내용	5년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 기간					
알림 하는 자의 식별, 위기(사)할 알림 확인 및 연락, 처리결과 통지	개인별 고유인증 식별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알림내용	5년					
위기상황 선택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입력	이웃 알림은 익명 알림 가능 (단, 접수결과,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음)						

■ 복지로 포털/네이버 검색(복지위기 알림)

- 복지위기 알림 기능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giro.go.kr)와 네이버 (www.naver.com)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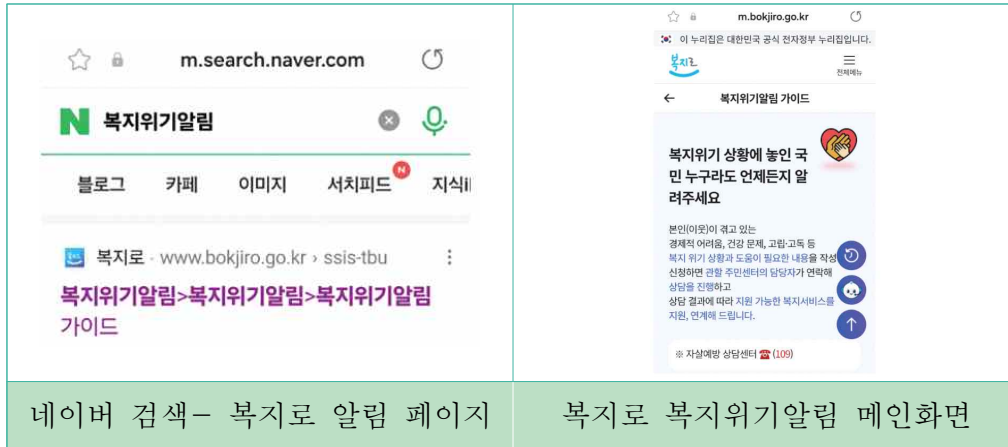
▶ 네이버(www.naver.com) 검색창에 ‘복지위기알림’으로 검색, 복지로 연계되어 활용 가능

● 이용 방법

- ① 복지포털 ‘복지로(www.bokgiro.go.kr)’ [복지위기알림] 메뉴 선택하고, 알림 유형(본인/이웃) 선택

	
복지로 메인 페이지	위기 알림 유형

- ▶ 네이버 포털(www.naver.com)에서 '복지위기알림'으로 검색하면 복지리로 연결(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



- ② 알림 하기 : 대상자의 위기상황, 가구유형 등 정보 입력 후 알림하기 완료

* 복지위기 알림 앱과 동일한 절차로 이용 가능

☆ m.bokjiro.go.kr ← 본인알림 ? • (필수)위기 상황 선택 선택하기 • (필수)가구 유형 선택 선택하기 도움이 필요한 분 • (필수)성별 ☐ 남성 ☐ 여성 • (필수)이름 취소 임시저장 알림하기	<table border="1"> <tr> <td>번호</td> <td>BOK000000000179</td> </tr> <tr> <td>요청유형</td> <td>본인</td> </tr> <tr> <td>간략내용</td> <td>일이삼사오육칠팔구공</td> </tr> <tr> <td>등록일자</td> <td>2024-02-02</td> </tr> <tr> <td>서비스의뢰 여부</td> <td>N</td> </tr> <tr> <td>처리상태</td> <td>접수대기</td> </tr> </table> 초기화 확인하기	번호	BOK000000000179	요청유형	본인	간략내용	일이삼사오육칠팔구공	등록일자	2024-02-02	서비스의뢰 여부	N	처리상태	접수대기
번호	BOK000000000179												
요청유형	본인												
간략내용	일이삼사오육칠팔구공												
등록일자	2024-02-02												
서비스의뢰 여부	N												
처리상태	접수대기												
알림 내용 입력	알림 내역 확인하기												

2. 안부 확인 서비스(방문·전화) 지원

가 주요 절차 및 내용

1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과 방문 일정 정하기

- 사전에 대상자와 방문일정을 약속합니다.
- ※ 지자체는 안부확인 대상과 방문 계획(주 0회 등) 제공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안전 확인과 안부 확인 조치

- ▶ AI 안부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위험 감지 시,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부 확인 및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AI 안부전화, 스마트 플러그, 한전 AMI, 스마트폰 앱(APP) 등

2 약속한 일정에 가정방문 및 안부 확인하기

- 계획된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등으로 안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방문 기록지 작성 및 제출하기

- 가정방문 기록지를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안부확인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유하기

- 안부 확인 중 방문 및 연락을 거부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를 최대한 파악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합니다.

나 안부 확인 시, 점검 포인트

» 건강 및 경제 상황 등 대해 안부를 살피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파악하고 상세히 기록합니다.

» 방문 시 대상자의 생활환경^① 및 생활방식^②에 꼼꼼한 관찰도 중요합니다.

① 생활환경 예시 :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 방치, 집안의 청소상태 등

② 생활방식 예시 : 계절에 맞지 않거나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의복 착용 등

» 약속된 방문 시 만나지 못하거나 중도에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고 대처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시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공유합니다.

다 안부 확인 등 대화 예시문

첫 대상자 방문시

▶ 본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 말하기

연결단 안녕하세요_____님,

저는_____동 이웃연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_____입니다.

* 지자체별 민간자원망 이름

대상자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연결단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네 주민들의 안부를 여쭙고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연락)했습니다.

▶ 날씨 등 기본 안부 묻기

연결단 날씨가 추워[더워]졌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식사나 건강 등 기본 생활상황 묻기

연결단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기침을 하시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사전 안내 하기

▶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하기

연결단 _____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현재 생활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응해주시겠습니까?

본 조사는_____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내용은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개인정보를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대상자 동의합니다.

연결단 그럼 지금부터_____님의 생활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_____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귀중한 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대상자 상황 확인 질문하기

▶ 다음 질문은 대상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 식사/음주에 대한 질문

연결단 평소 식사는 어떻게 드시나요?

대상자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단 제대로 된 식사를 하루에 몇 끼 정도 하시나요?

대상자 매 끼를 막걸리나, 라면 등으로 때우고 있어요.

■ 위험기준

-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연결단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술은 혼자 드시나요?

대상자 네, 집에서 혼자 먹는 편입니다.

연결단 보통 일주일에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드신 적이 몇 일이나 되세요?

대상자 두 번 정도는 술을 좀 많이 마시다 잠이 들기도 해요.

■ 위험기준

- 일주일에 혼자서 1회 이상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우

청장년 대상 참고사항 : 음주 이외에도, 평소 인터넷 도박, 게임 등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 필요

• 주변과의 소통과 지원 정도

연결단 보통 일주일에 주변 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외출하시거나, 주변분들과 만나는 경우는 어느정도 있으신가요?

대상자 잠깐 마트에 가는 정도 외에는 혼자서 지내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요.

연결단 그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사람이 있으신가요?

대상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연결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험기준

- 일주일에 한 번도 주변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사람(기관)이 없는 경우

청장년 대상 참고사항 :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한 교류, 온라인 생필품 구입은 일반적인 소통으로 보기 어려움(도움이 필요할 때, 상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의 소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경제/건강 대한 질문

연결단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대상자 건강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조금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생활해요.

연결단 현재 지급되는 연금, 복지급여 등은 없으신가요?

대상자 네, 지원받는 급여는 없어요.

연결단 혹시 형편이 어려워 최근 1년 사이에 집세나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두 달이상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대상자 네, 1년이면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위험기준

- 일정한 소득이나 복지급여 등 수입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임대료나 공과금 체납이 있는 경우

연결단 최근에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대상자 네, 있었어요.

연결단 혹시, 병원 치료를 받으셨나요?

대상자 아니요. 치료비가 걱정되어, 그냥 참고 지내요.

■ 위험기준

- 치료가 필요한 상황(몸과 마음)인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청결상태에 대한 질문

연결단 빨래나 집청소를 하는데에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데에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주의사항

- 집과 대상자의 청결상태를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질문

■ 위험기준

- 대상자와 집안의 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

연결단 최근에 외롭고, 고독해서 생활하기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간혹 힘들 때, 안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 주의사항

-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대상자와의 수용정도 등 상황을 보고 질문

■ 위험기준

- 지난 2주간 심한 외로움(고독감)을 느끼는 경우
-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거나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낀 경우

[참고] 접촉, 관계 및 서비스 거부 사례 대처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매뉴얼에서 참고)

■ 초기 방문 시 접촉(방문) 거부 사례

-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접촉 단계부터 방문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한 번의 방문으로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 사전 연락 및 방문 거부 대응
 - 2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통·반장과 함께 가정방문을 시행하여 대상자의 환경을 파악합니다.
 - 집 밖에서 간접적으로 만나기를 시도합니다.
(예, 문고리 편지, 문고리 대화, 생활지원 키트 남기기 등)
 - 연락 두절 및 가정방문에도 만날 수 없는 경우 우편물을 통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 가정방문 거절 시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관계(소통) 거부 사례

- 방문하여 문을 열어 직접 만나기는 하였으나 고립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장기간 고립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해 하거나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익숙할 경우 소통이 더 어렵습니다.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소통이 어려운 사례에 해당합니다.
 -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질환, 장애, 치매, 술에 취한 경우 등으로 소통이 어려워 욕구·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관계 거부 사례 대응
 -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당사자 욕구를 추정하여 자원정보를 누적 취합합니다.
 - 가족 통해 정보 수집하고, 협력을 이끌어 냅니다.
 - 대상자와 친숙한 지인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 어느정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자조 모임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합니다.

■ 서비스 거부 사례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고립 및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본인 스스로 고립 가구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과거 수급 탈락으로 복지서비스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강제 개입(입원·개문)으로 기관을 불신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거부 사례 대응
 - 도움 필요시 언제든지 요청 가능한 곳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립니다.
 - 도움 요청에 대한 작은 신호에도 바로 대응합니다.
 - 대상자와 지속 소통해온 친근한 담당자가 동행 하여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지자체 민간 인적 안전망의 안부확인 서비스 활용 사례

① 외출 응원 챌린지 「고(GO)고한 하루」 (부산 수영구)

- 동 행정복지센터가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동별 3명) 선정하여, 외출 인증 쿠폰을 제공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사업에 참여
- 대상자의 외부 활동은 건강 체크 1회와 목욕 쿠폰 사용 1회 인증은 필수 활동이고, 공공·민간기관 방문 및 관내 지역 방문 1회는 선택 활동
- 3회 이상 외출 인증 확인되면 생필품이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일대일 매칭되어 물품 전달과 안부 확인

② 「주주데이」, 「신통방통복지플랫폼」 (서울 관악구)

- 「주주데이」는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날’의 줄임말로 복지통(반)장이 우편함에 단전·단수 및 체납고지서 등으로 고독사 위험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
- 「신통방통복지플랫폼」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전입 미신고자 등 등본/실거주 주소지가 달라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진행

③ 이웃돌봄단 「뚜비행복잇GO」 (대구 수성구)

- 「뚜비행복잇GO」는 대구광역시의 특화사업인 ‘즐거운생활지원단(즐생단)’ 2명과 수성구의 행복지킴이(1명), 지역주민(2명)으로 구성된 ‘이웃돌봄단’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굴된 대상에게 말벗·외출동행 등 활동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④ 생거진천 안부확인서비스 (충북 진천군)

-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후, 안부확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안부확인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수발신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읍·면의 담당자가 안부확인 전화를 하거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방문 확인 시 발견된 문제는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위기 해소를 위해 지원

3.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지원

- » 사회적고립·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방문 조사는 상담(대화 등)을 통해 위험 정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결정하기 위한 지자체 조사입니다.
 - 필요한 경우, 이웃연결단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조사 방문 시 동행합니다.
- » 방문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인
 -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
 -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정확히 안내
 - 현재의 문제상황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대상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 대상자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
 - 방문상담을 통해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생활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기

4. 지자체 특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지원

가 개요

- » 지역 특성에 따라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에 다양한 사회관계망 형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관계망 형성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주관하거나 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 » 이웃연결단의 역할
 - 서비스 대상 가구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산책, 외출 등 지원)를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참여(요리 교실 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시

- 산책 : 동네 산책로 및 공원 등 산책을 통한 친밀감 형성
- 나들이 : 영화관람 등 다양한 경험 쌓기
- 장보기 : 시장, 마트 등에서 장보기
- 운동 :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한 체력 관리
- 요리 : 지역복지관 및 공유 부엌에서 간편 음식 등 함께 요리
- 취미활동 : 직접 천연비누, 향초 등 만든 후 서로 나눠 가지기
- 정서 지원 교육 : 지역복지관 및 민간기관에서 웃음치료, 힐링프로그램 등 참여하

나 참고 사례

» 이웃연결단이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1:1)

- 수행 기간 수시
- 수행 내용 산책·장보기 동행, 밀반찬쿠폰 전달
- 수행 단위 이웃연결단과 대상가구 1:1

서울 중랑구 :

-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산책·장보기 활동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월2회 반찬(밀반찬쿠폰)을 전달하여 영양 공급을 도움

» 이웃연결단이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1:다수)

- 수행 기간 수시
- 수행 내용 요리교실
- 수행 단위 이웃연결단과 대상가구 다수 참여

부산 해운대구 : 서로 같이 나눔 부엌

- 동별 공유 부엌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 이웃살핌 활동과 요리교실 등 이웃 간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이웃연결단이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보조 역할)

- 수행 기간 수시
- 수행 내용 요리교실
- 수행 단위 외부 민간기관 주도

경북 고령군 : 중장년 1인가구 ‘푸드아트테라피 교실’

- 요리실습, 요리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수강생 간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

IV

활동 시 주의사항



1. 개인정보관리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와 사생활 등 비밀을 공유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가구 방문할 때, 위험 가구로 식별되는 표지(스티커, 안내문, 메모 등)를 부착하거나 비치하지 않습니다.
- » 후원금품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 시에 지원 대상 가구의 실명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 후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원치 않는 전달식 등에 참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활동 홍보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 » 이웃연결단으로 위촉 시 발굴 및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정보누설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가 가정방문 관련 안전 수칙

- » 가정방문 전 알림 및 동행 수칙
 - 방문 전 방문 대상자와 접촉하여 방문 인력의 방문을 알립니다.
 - 방문 장소와 복귀 시간을 담당공무원과 동료에게 반드시 알립니다.
 - 낯선 지역을 방문할 경우, 그 장소에 익숙한 동료에게 문의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 고위험군 방문 대상자의 경우 방문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2인 1조 방문수칙을 준수하여 방문합니다.
 - 고위험군(정신건강 등) 방문 대상자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동행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합니다.

» 가정방문시 안전 고려사항

-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필요시 대상자 동의하에 수행합니다.
- 방문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이 음료/음식을 권할 경우, 제공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만약, 여러 상황상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단한 물 등을 제공받도록 함)
- 상담 공간 가까이에 흥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유리병, 칼, 송곳 등)은 상담 전에 자연스럽게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필요시 주변 정리 등)
- 가급적 밀폐된 공간보다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습니다.
- 상담 공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나 폭력 발생 시 대처

- »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그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 » 벗어날 수 없을 경우, 최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베개, 클립보드, 책, 수첩 등의 주변 도구와 팔 등의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 » 폭력 대상자가 머리를 잡아당기려 하면, 순간적인 힘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잡은 손을 잡아 손가락을 느슨하게 만들어 들어올리도록 합니다.
 - 머리를 잡고 있는 대상자의 손 위에, 머리가 잡혀 아파서 대응하는 것처럼 서서히 양손으로 각지를 끼워 포갠 후, 순간적으로 머리를 강하게 아래쪽으로 내려, 대상자의 손목이 꺾이도록 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 목을 졸리고 있는 상황의 경우 양팔을 곧게 들어 올려 재빠르게 돌아섭니다. 이렇게 하면, 팔과 어깨가 붙잡고 있는 손을 풀 수 있습니다.
- » 넘어졌다면, 발과 다리로 공격을 막습니다.
- » 물렸다면 물린 부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물고 있는 안쪽으로 밀어 넣도록 합니다.
- » 가해자가 절대로 무기에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야기하도록 독려하고, 가해자에게 집중하며, 가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다 성희롱 대처

- » 방문 대상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리고, 침착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선생님, 방금 발언은 제가 듣기에(또는 느끼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십시오.”
- » 이후에도 성희롱을 중단하지 않으면, 녹음 사전 고지 후 녹음 기기로 상담 내용을 녹음합니다.
“선생님, 방금 발언은 제가 듣기에(또는 느끼기에) 불편합니다. 지금 상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십시오.”

※ 사전고지로 인해 방문대상자와의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독사 위험자의 사망 사고 발견 시 대처방법

- » 고독사 위험군의 안부확인을 위해 방문 시 고독사를 발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여러 번의 연락 두절 시 해당 읍면동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자 가정을 공동 방문합니다.
- ② 문을 두드리며 대상자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 ③ 문이 열린 상황에 따라 대처합니다.

- 문이 열린 경우 : 경찰 또는 구조대원에게 신고하고 긴급상황을 전달합니다.
- 문이 닫힌 경우 : 경찰 또는 구조대원에게 신고하고 긴급상황을 전달하고 도착 시까지 대기합니다.

※ 혼자서 확인을 하거나, 임의로 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

- ④ 대상자 건강상태 등에 따라 조치합니다.
 - (위독 시) 연락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 상황을 전달합니다.
 - (위독 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에 협조합니다.(발견 경위 등 진술)
 - (사망 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 협조합니다.(발견 경위, 이전 대상자 건강 및 생활상태 확인, 경찰서 출석, 진술조사 작성 등)
 - (사망 시) 유가족이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유가족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1. 이웃연결단 참여 신청서

- 이웃연결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의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앞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택)		
	(근무지)		
휴대전화	- -	이메일	@
소속	☐ 신고의무자	(소속기관명)	
	☐ 생활업종종사자	(업종/점포명)	
	☐ 주민	(소속단체명)	
희망하는 활동유형 (복수선택가능)	☐	활동유형 설명	
	☐	활동유형 설명	
	☐	활동유형 설명	
희망하는 활동지역	(예시) 00 아파트 00동, 00거리 인근 등		
SNS 활동 참여의사 (복수선택가능)	(예시) → SNS 활동이 없는 경우 항목 삭제 ☐ 네이버 밴드 ☐ 카카오톡 ☐ 전용어플 ☐ 희망하지 않음		
자원봉사 인정	☐ 인정 희망(○ 등록 ○ 미등록) ☐ 희망하지 않음		

* 필요시, 양식의 세부항목은 변경 가능

이웃연결단 활동 서약서

본인은 ○○(시/도) ○○(시/군/구)의 「이웃연결단」에 대한 아래와 같은 활동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참여자로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사업명) ○○(시/도) ○○(시/군/구) 이웃연결단
- (주관기관) ○○구 ○○○동주민센터
- (활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주요내용) → 주요 활동 내용 및 조건 작성
 - 월 00시간 이내 활동(주 00회, 1일 00시간 이내)
 - 회의 참여 활동 포함(사례회의, 이웃연결단 회의, 자치모임 등)
- (활동비 지원) 월 최대 00원 → 활동비는 필요한 경우 작성
 - 실비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위급상황 발견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에 활용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기타사항)
 - 상해보험 가입 필수
 - 보안 서약 필수
 -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사적 사용 및 외부 누설 금지
 - 정보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기타 보안 서약서에 규정한 내용 반드시 준수
 - 이웃연결단으로서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의 활동 규칙을 따라야 함

본인의 활동 수행 중 이웃연결단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 변동이 발생하거나 활동 중 특별한 문제 상황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수행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활동할 것이며, 활동 위반 시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2. 이웃연결단 참여 협약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시/도) ○○(시/군/구)와 ○○(기관/단체)는 적극적인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상호 간 협의된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기본원칙) 양자는 모든 국민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고독사예방법 제3조)의 정신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위험 징후가 있는 대상 발견 시 신고 의무를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자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1.
- 2.
- 3.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5조(협약이행) 양자는 제3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의 실질적인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협약내용 조정)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7조(시행) 본 협약은 상호 합의 서명한 일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 ○

○○(기관/단체)대표자

○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웃연결단용, 대상자용)

□ 이웃연결단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웃연결단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도) ○○(시/군/구)는 이웃돌봄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동의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 이웃연결단 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 - 이웃연결단 활동 관리(활동·교육비 지원, 상해 보험가입, 안내 및 정보 발송, 활동보고 등) - 이웃연결단 활동에 따른 사업 운영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폰 등)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및 연구 등을 위한 기관 - 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자체에서 위 목적을 위해 지정하는 기관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및 연구 등	대상자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이웃연결단 활동 신청 및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 ○○(시/군/구) 귀중

□ 서비스 대상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안부확인 사항)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정부부처 및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및 연구 등	서비스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2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서명 인]

4. 보안서약서

이웃연결단 활동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년 _____월 일부로 ○○(시/도) ○○(시/군/구)의 이웃연결단 관련 활동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이웃연결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활동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업무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활동의 성과가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인의 활동 및 역할이 변경되거나 활동이 종료된 경우 또는 수집한 정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본인이 보유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자 입회 하에 폐기 한다.
4.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주관 기관의 관계 규정과 민·형사상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5. 관찰 기록지

관찰 기록지					
방문일시			방문자		
대 상 가 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거주지 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텔) ☐ 원룸 ☐ 쪽방 ☐ 여관/모텔 ☐ 기타 ☐ 직접기재()				
확인 사항					
관 찰	집 앞에 우편물, 독촉장 등 우편물이 쌓여 있다.				☐ 없음 ☐ 있음
	집 주변에 악취가 나고, 벌레 등이 보인다.				☐ 없음 ☐ 있음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 없음 ☐ 있음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 없음 ☐ 있음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만 지낸다. 외출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한다.				☐ 없음 ☐ 있음
	자주 마주치던 곳에서 보이지 않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				☐ 없음 ☐ 있음
기타 확인 사항	※ 집주인, 이웃을 통해 확인된 내용 등을 작성바랍니다. 				

6. 가정방문 기록지

관찰 기록지					
방문일시			방문자		
대 상 가 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거주지 유형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텔) ☐ 원룸 ☐ 쪽방 ☐ 여관/모텔 ☐ 기타 ☐ 직접기재()				
확인 사항					
관 찰	집 주변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 없음 ☐ 있음	
	집 실내에 음식·쓰레기·배설물이 방치되어 있다.			☐ 없음 ☐ 있음	
	냉장고, 주방 등을 볼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			☐ 양호 ☐ 불량 ☐ 심각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한동안 세면, 목욕을 하지 않은 듯 하다.			☐ 양호 ☐ 불량 ☐ 심각	
	기타 특이 사항()				
대 화	끼니는 잘 챙기고 계신가요?(주로 어떤 것을 드시나요?)			☐ 양호 ☐ 불량 ☐ 심각 (기타 :)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드시나요?			☐ 없음 ☐ 있음(주 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시나요?			☐ 없음 ☐ 있음(주 회)	
	외출은 얼마나 하시나요? (어떤 일로 하셨는지?)			☐ 없음 ☐ 있음(주 회) (기타 :)	
	최근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적이 있었나요?			☐ 없음 ☐ 있음(주 회) (기타 :)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 근로소득 등 소득 ☐ 가족 지원 ☐ 친구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 기타()	
	최근 임대료나 공과금이 2개월이상 밀린 적이 있나요?			☐ 없음 ☐ 있음(개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나 기관이 있나요?			☐ 가족 ☐ 친구 이웃 ☐ 기관() ☐ 기타() ☐ 없음	
	기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6호, 2023. 9. 14.,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8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1호, 2024. 3.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13., 2024. 2. 6.>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5. 12. 30.>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개정 2023. 9. 1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9. 14.>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3. 9. 1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14.>	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3. 12.]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	--